
자료

-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 국내언론관계판결
 - 외국언론관계판결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언론법제관련문헌
-

PAC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당사자의 신원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단체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1서울조정119
청 구 명: 손배청구
신 청 인: 박OO
피신청인: 한국재경신문(주)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1. 9. 20.
처리결과: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각 기사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인 SBS의 < 짹 > 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의 내용과 함께 신청인의 얼굴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진 자가 올린 과장된 폭로성 글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게 돼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나아가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공표됨으로써 초상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취재상의 실수를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

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아이비타임즈『 짹 남OO PD, 여자 OO호 ‘불륜녀’ 논란 “테러 수준…큰 상처, 걱정돼”』, 『 짹 여자6호 불륜녀? 네티즌 공포 “과거 사진+행실 폭로…사생활 없어”』, 『 짹 여자OO호, 과거 폭로글 논란 “유부남과의 불륜도 모자라…”』 제하의 각 기사(각 2011년 9월 1일자)

내용 1: (‘ 짹 남OO PD, 여자 6호 ‘불륜녀’ 논란 “테러 수준…큰 상처, 걱정돼” 제하의 기사) 확인된 바 없는 ‘과거 폭로글’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SBS ‘ 짹 여자 6호와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고 있는 남OO PD가 입장을 밝혔다.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가진 남 PD는 “출연자들의 과거 신상 폭로가 이어져 시청자 게시판의 폐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시청자들의 교감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청자 게시판이 각종 의혹과 루머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돌싱 특집 때도 여자 5호의 루머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원치 않는 상황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시청자 게시판의 존재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 짹 ’에 출연해 동료 출연진들을 자상하게 챙기고, 보살펴주는 모습을 비롯해 인생을 봉사활동 하면서 마감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씨를 드러내 시청자들의 호감을 산 여자 6호는 방송 직후 한 네티즌의 주장 글로 인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네티즌은 “나한테는 욕도 참 잘했던 그 분”이라며 “내 신혼 침대에서도 주무시고 가셨던 그 분이 딱하니 천사표로 등장했다”며 여자 6호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간접적으로 폭로했다. 이에 대해 남○○ PD는 “사실이 확인된 글도 아니고 그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또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내용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할 문제지 공론화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너가 너무 없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놓을 만한 테러 수준의 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 PD는 여자 6호에 대해 “아직 연락을 취하지는 못했다”며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내용 2 : (‘짹’ 여자○호 불륜녀? 네티즌 공포 “과거 사진+행실 폭로…사생활 없어” 제하의 기사) SBS ‘짹’ 12기 여자 ○호의 과거사가 낱알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녀사냥을 비롯한 모든 여파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짹’에 새로운 12기 멤버로 등장한 여자 ○호는 진심 어린 눈물 고백과 함께 특유의 성품을 선보여 시청자들 사이에서 ‘천사표’라는 애칭을 얻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짹’ 시청자 게시판에 여자 ○호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는 네티즌들간의 설전으로 이어졌다. 문제의 글쓴이는 여자 ○호에 대해 “내 신혼 침대에서도 주무시고 가셨던 그 분”이라며 “결혼식 후 신혼집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라고 주장해 그녀가 과거 불륜을 저질렀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맹비난을 퍼붓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와 함께 마녀사냥을 우려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한 네티즌은 공포에 휩싸인 듯 “그 이야기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며 “옛날 사진부터 과거 이야기까지…본인의 사생활이라는 게 없

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진실은 무엇일까?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충격”이라며 “여자 눈물에 속으면 안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용 3 : (‘짹’ 여자○호, 과거 폭로글 논란 “유부남과의 불륜도 모자라…” 제하의 기사) SBS ‘짹’ 12기 여자 6호가 ‘과거 폭로글’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짹-한 번 더 특집’ 최종선택과 더불어 새로운 ○○기 멤버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각각의 남녀 7명은 첫인상 선택을 통해 서로에 대한 호감을 내비쳤다. 특히 초반 여자 4호와 7호에 대한 남자 출연진들의 뜨거운 경쟁이 흥미를 더했다. 아울러 압구정동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여자 ○호 역시 진심 어린 눈물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가장 나이가 많으며 자신 없는 모습을 내비친 여자 ○호는 동료 멤버들을 잘 보살피는 자상한 면모를 보였으나 초반 남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서러운 눈물까지 보였다. 그러던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남자 ○호가 여자 ○호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그녀는 벽찬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 이 모습을 접한 시청자들도 여자 6호의 성품을 칭찬하는 동시에 두 사람이 꼭 짹을 맺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짹’ 시청자 게시판에는 ‘천사표’로 등극한 여자 ○호에 대한 과거 폭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 네티즌은 “내 신혼 침대에서도 주무시고 가셨던 그 분이 딱하니 천사표로 등장하셨더라”는 글을 남겨 여자 ○호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음을 시사했다. 이어 “결혼식 후 신혼집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라고 덧붙여 충격을 줬다.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비난 섞인 의견을 보이며 논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큰 문제를 만들지 말자”며 “명예훼손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짹’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문제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1백 5십만원)

신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에어컨에 곰팡이가 많아 산모와 가족이 피부병 등에 걸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2011부산조정27·28

청구명: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KNN

중재부: 부산중재부

접수일: 2011. 09. 23.

처리결과: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에어컨에 곰팡이가 많아 여기서 생활한 산모와 가족이 피부병 등에 걸렸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입실가족이 곰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습기와 먼지가 흡착한 물때이고, 이들이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중에 기관지염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피부병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산후조리원 위생문제 때문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된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KNN-TV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제하의 보도(2011년 8월 30일 20:25)

내용: (앵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에어컨에서 곰팡이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산모와 가족들이 기침과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 가정은 가족 모두가 심한 기침을 동반한 기관지염을 앓고 있습니다.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면서 생긴 증상입니다. 4살 난 첫째는 온몸이 발진까지 생겼습니다. (신생아 아버지) “(4살된) 첫째 아이는 자다가 구토를 하듯이 기침을 하고, 다시 잠이 들고…” (기자) 이상하게 여긴 산모가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에어컨, 퀴퀴한 냄새가 나 확인을 했더니 외부에 곰팡이가 끼어있습니다. 내부 필터까지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세균과 곰팡이 고스란히 들이마신 겁니다. (신생아 어머니) “곰팡이 핀 걸만 보고 에어컨 바로 꺼버리고 창문 열고…” (기자) 주변 병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다. 부랴부랴 청소를 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한 다른 가족) “곰팡이 발견되고 나서) 각 방 에어컨을 그 뒤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기자) 전문가들은 대량의 곰팡이와 세균에 직접 노출될 경우 기관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오나가 아닌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다). (기자) 어느 곳보다 청결이 우선시되어야 할 산후조리원, 곰팡이 투성이 에어컨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NN 김○○입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KNN뉴스아이 말미에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바로 잡습니다. (또는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뉴스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2011. 8. 30.자 KNN뉴스아이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제하의 기사 중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한 다른 가족’으로 자막 처리된 기사는 ‘산후조리원 상담실장’으로 정정하며, 산후조리원 에어컨에 곰팡이가 득실하였고, 이로 인해 입실가족이 피부병과 기관지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곰팡이라는 것과 산후조리원의 곰팡이로 인해 피부병과 기관지염이 발병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반론 보도입니다.

나. 내용 : 2011. 8. 30.자 KNN뉴스아이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 입실가족이 곰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습기와 먼지가 흡착한 물때이고, 산후조리원입실 가족이 산후조리원에 입실 중에 기관지염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피부병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피부병이 산후조리원 위생 문제로 발병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론합니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본 방송은 지난 8월 30일 뉴스에서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이라는 제목으로 모 산후

조리원의 에어컨에 곰팡이가 많아, 여기서 생활한 산모와 산모의 가족이 피부병과 기관지염에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산후조리원은 에어컨에서 발견된 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먼지와 습기가 흡착된 물때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기관지염이나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화면 아래 자막으로 위 보도문의 제목(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관련 반론 보도문)을 계속 표시한다.

3.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피신청인이 운영중인 인터넷매체에서 삭제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의료기기를 재활용했고, 이로 인해 침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2011서울조정149·1150·1151

청구명: 정정·반론·손배

신청인: 하○○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중재부: 서울재중재부

접수일: 2011. 9. 29.

처리결과: 조정성립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침 등 의료기기의 재활용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화농성 관절염에 감염된 사례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침을 포함한 의료

기기를 재활용한 적이 없고, 환자의 화농성 관절염은 해당 한의원의 침 치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 중 침 재활용과 환자의 감염사례에 대한 부분의 반론보도를 수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론보도 및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영상 중 신청인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 제하의 보도(2011년 9월 2일 22:00)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목: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박○○ PD, 김○○ 작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본 방송은 지난 2011년 9월 2일 <소비자고발>에서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라는 제목으로, 해당 한의원(신청인)을 침 등 의료기기 재활용의 감염 사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한의원과 의료자문센터, 관할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한의원은 침을 포함한 의료기기를 재활용한 적이 없고, 환자의 화농성 관절염은 해당 한의원의 침 치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반론보도문) 가. 제목: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박○○ PD, 김○○ 작가)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본 방송은 지난 2011년 9월 2일 <소비자고발>에서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라는 제목으로, 해당 한의원(신청인)을 침 등 의료기기 재활용의 감염 사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한의원은 침을 포함한 의료기기를 재활용한 적이 없고, 환자의 화농성 관절염은 해당 한의원의 침 치료와 관련이 없으며 이는 관할 보건소와 의료자문센터에서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ㅎ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본 방송은 지난 9월 2일 <소비자고발>에서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라는 제목으로 일산 모 한의원이 치료 과정에서 침을 재활용하여 환자에게 감염이 일어났다는 피해자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한의원은 “침을 포함한 의료기기를 재활용한 적이 없고, 환자의 화농성 관절염은 해당 한의원의 침 치료와 관련이 없으며 이는 관할 보건소와 모 의료자문센터에서 확인한 사실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합의에 따른 보도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10월 21일까지 조정대상보도가 난 프로그램 <소비자고발> 말미에 보도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되게

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않게 낭독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KBS 홈페이지 원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 중에서 신청인의 사례가 언급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2,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휴대전화 기본료 인화에 대해 보도하면서, 통화하며 길을 가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162
 청구명 : 손해청구
 신청인 : 송○○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11. 10. 4.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휴대전화 기본료 인화에 대해 보도하면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며 길을 지나가던 신청인의 모습을 10여 차례 관련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뉴스, 시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피신청인이 수 차례 방송함에 따라 초상권을 침해당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 신청인이 스마트폰 사용자로 오인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조정대상보도에 사용된 신청인 초상을 피신청인의 영상 데

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며, 향후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 초상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 조정대상보도

KBS-1·2TV <생생정보통>, <뉴스7>, <뉴스9>, <뉴스라인>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화」 제하의 각 보도(2011년 6월 2일), <뉴스 12> 프로그램 「스마트폰 가입자 1500만명 돌파」 제하의 보도(2011년 7월 13일), <뉴스광장> 프로그램 「SKT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제하의 보도 등 10여건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백만원)

<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 사용된 신청인 초상을 피신청인 영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며, 향후 보도에 신청인 초상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향후 보도에 신청인의 초상을 사용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본 건 조정신청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결정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신청인의 모습(이 사건 신청인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2011. 6. 2.자 <생생정보통> 프로그램 등 피신청인 방송 프로그램에 10여 회 방송함으로써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인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보도가 통신요금 인하 등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중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거리의 스케치 촬영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촬영 직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청인의 초상이 근접 촬영되어 누구나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방송된 점, 신청인 초상이 10여 회에 걸쳐 반복하여 사용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

하면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 본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표됨으로써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필연성 및 긴급성이 없는 점, 근접 촬영, 수차례 방영), 피신청인 보도의 전파력이 큰 점, 이 사건 장면의 보도 목적이 통신요금 인하 등 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신청인의 초상이 각 방송보도에 노출된 시간이 약 3초 이내의 분량인 점, 보도 내용이 그 자체로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이 방영 즉시 이의하지 않아 수차례 방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이 재정지원 대학 선정 평가 결과를 정치권의 개입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1충북조정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과학기술부
피신청인 : 주식회사 충청타임즈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11. 10. 14.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서 배제된 청주교대와 교원대를 포함한다면 도내 대학 절반이 교과부가 밝히는

부실대학인 셈이며, 한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의 도세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까지 보유한 지역 정치권이 결과적으로 지역대학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성토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충북 A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점수에서 미세한 차이로 선정 여부가 판가를 나는 상황에 직면해 충분히 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태주면 제외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43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을 따지자면 충북이 가장 높았다”라는 해당 대학 관계자의 인터뷰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서 배제된 것은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할 수도 없었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은 객관적인 8개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태 특정 대학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지역별로 전북과 부산이 5곳, 충북 외에 강원·경북·전남도 각각 4곳이 포함되어 충북에만 특별히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대학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언급한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서 배제된 이유가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 외 신청인이 문제 삼은 보도내용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으나,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이 원 기사에 반영되지 않아 조정대상 기사가 신청인이 실시한 대학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반론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충청타임즈 『충북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제하의 기사(2011년 9월 27일자 1면)

내용: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구조개혁 대상 대학에 충북지역 대학 5곳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도내 교육계와 도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충북 지역사회의 총체적 역량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장까지 가지고 있는 충북이 번번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많은 도민들은 분노감마저 드러내고 있다. 충북은 사립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곳 중 4곳이, 국·공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5곳 중 충북대 1곳이 포함돼 16개 시·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이 13%에 이른다. 여기에 막판에 총장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해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에서 배제된 청주교대와 교원대를 포함한다면 도내 대학 절반이 교과부가 밝히는 부실대학인 셈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해당 대학들의 미비점을 심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교육 외적인 요인에 충북이 희생양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의 도세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까지 보유한 지역 정치권이 결과적으로 지역대학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성토했다. 이 인사는 특히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청원)과 정치권을 지목하면서 “이 지경이 됐는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라며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된 충북 A대학 관계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과 관계없이 인맥이 닿는 의원들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쫓아다녔지만 헛수고였다. 이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점수에서 미세한 차이로 선정 여부가 판가를 나는 상황에 직면해 충분히 지역의원들이 힘을 보태주면 제외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43

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이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어느 대학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일명 TK지역은 빠져나가고 도세가 약한 충북만 다수 포함됐다”며 “다른 지역 의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역 대학 살리기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을 따지자면 충북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재정지원 하위대학 15%인 43개 대학에 포함된 지방대학은 32곳 가운데 광역시인 부산(5곳)에 이어 충북은 4곳으로 제일 많았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충청타임즈 종합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원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기사의 본문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한다.

가. 제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용 : 본지는 막판에 총장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해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서 배제된 청주교대와 교원대를 포함한다면 도내 대학 절반이 교과부가 밝히는 부실대학인 셈이고, 이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점수에서 미세한 차이로 선정여부가 판가름나는 상황에 직면해 충분히 지역의원들이 힘을 보태주면 제외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43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되며, 이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어느 대학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일명 TK 지역은 빠져나가고 도세가 약한 충북만 다수 포함됐다’며 ‘다른 지역 의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역 대학 살리기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을 따지자면 충북이 가장 높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사

실 확인 결과, 일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사실 확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는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지 않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지정할 수도 없었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은 객관적인 8개 지표(전문대는 9개)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지역의원들이 힘을 보태 특정 대학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금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지역별로 전북과 부산이 5곳, 충북 외에 강원·경북·전남도 각각 4곳이 포함되어 충북에만 특별히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기에 정정합니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타임즈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5개大 구조개혁 대상...”)과 같게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충북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 지난 9월 27일자 1면(인터넷판 9월 26일) “충북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제하의 기사에서 “막판에 총장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해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서 배제된 청주교대와 교원대를 포함한다면 도내 대학 절반이 교과부가 밝히는 부실대학인 셈이고, 한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의 도세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 위원장까지 보유한 지역 정치권이 결과적으로 지역대학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증거' 라고 성토했으며, 충북 A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점수에서 미세한 차이로 선정 여부가 판가를 나는 상황에 직면해 충분히 지역의원들이 힘을 보태주면 제외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43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었고, 이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어느 대학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일명 TK 지역은 빠져나가고 도세가 약한 충북만 다수 포함됐다' 며 '다른 지역 의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역 대학 살리기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을 따지자면 충북이 가장 높았다' 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에서 배제된 것은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할 수도 없었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은 객관적인 8개 지표(전문대는 9개)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대학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지역별로 전북과 부산이 5곳, 강원·경북·전남도 각각 4곳이 포함되어 충북에만 특별히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하는 것입니다.

〈결정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충청타임즈 2011년 9월 27일자 1면(인터넷판 9월 26일) "충북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제하의 기사에서 "막판에 총장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해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에서 배제된 청주

교대와 교원대를 포함한다면 도내 대학 절반이 교과부가 밝히는 부실대학인 셈이고, 한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의 도세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까지 보유한 지역 정치권이 결과적으로 지역대학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증거' 라고 성토했으며, 충북 A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점수에서 미세한 차이로 선정 여부가 판가를 나는 상황에 직면해 충분히 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태주면 제외될 것으로 믿었지만 결국 43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고, 이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어느 대학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일명 TK 지역은 빠져나가고 도세가 약한 충북만 다수 포함됐다' 며 '다른 지역 의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역 대학 살리기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부실대학 포함 비율을 따지자면 충북이 가장 높았다' 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에서 배제된 것은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할 수도 없었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은 객관적인 8개 지표(전문대는 9개)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태 특정대학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지역별로 전북과 부산이 5곳, 충북 외에 강원·경북·전남도 각각 4곳이 포함되어 충북에만 특별히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대학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정대상 기사에서 언급한 청구교대와 한국교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서 배제된 이유가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 외 신청인이 문제 삼은 보도내용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기사에 반영한 바 없으므로 조정대상 기사가 신청인이 실시한 대학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어 반론보도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정정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반론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공적 인물’ 이라도 상견례나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옷차림에 대한 보도, 지속적인 사진 촬영과 그 결과물은 위법하다.

〈판결 요지〉

가. 원고 정용진은 이른바 ‘공적 인물’로서 국내의 유명 여배우인 고현정과의 결혼 및 이혼을 통하여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 역시 원고 정용진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바, … 원고들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원고들이 거주할 신혼집의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은 일응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특히 원고 ○○○의 경우에는 원고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정용진과 같은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

이 원고 ○○○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은 비록 그 관찰대상의 지점이 호텔 출입문 앞이나 주거지 앞 등과 같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곳에서의 원고들의 사적인 생활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원고 ○○○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 및 이를 촬영한 사진들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취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생활 내지 일상생활이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관찰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이를 기록한 결과물이 사회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받는 피해의 정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사 건 : 2011가합44370 사생활침해행위금지 등
원 고 : 1. 정용진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촌

담당변호사 최○○, 김○○

피 고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 장○○

변론종결 : 2011. 9. 7.

판결선고 : 2011. 10. 12.

주 문

1. 가.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은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www.dispatch.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3, 4, 6 기재 각 기사와 별지 2 기재 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여섯 번째 사진 및 별지 5 기재 기사 중 세 번째 사진 부분을 각 삭제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이 위 가. 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피고 3, 4, 5, 6, 7, 8은 각자 원고 정용진에게 500만 원, 원고 ○○○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28.부터 2011.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기사를 주문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하라.

2. 피고들이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일마다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정용진은 1968년생 남자로서 1998년경부터 국내 굴지의 재벌인 신세계그룹에 속한 주식회사 신세계의 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년경부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신세계 그룹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여 온 사람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재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원고 ○○○는 1980년생으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예비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유학생활동을 거쳐 플루트 연주자 겸 음악대학교 강사로 활동하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정용진과 결혼한 사람이다.

나. 원고 정용진은 1995년 국내 유명 여배우인 고현정과 결혼하였다가 2003년 이혼하였는데, 고현정과 의 결혼 및 이혼은 당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후 원고 정용진은 2007년경 음악회 모임을 통하여 이혼녀인 원고 ○○○를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여 왔는데, 2007. 12.경 언론을 통하여 원고들의 열애설이 처음 불거진 이후 2010. 7.경 원고 정용진이 원고

○○○의 연주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언론 매체를 통하여 원고들의 결혼설이 세간에 퍼지게 되었다. 실제로 원고들은 2011. 5.경 언론의 큰 주목을 받으면서 결혼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은 2010. 12. 29.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서 인터넷신문 사이트인 '디스패치' (www.dispatch.co.kr, 이하 '이 사건 신문' 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 3, 4, 5는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로서, 피고 6, 7, 8은 피고 회사의 소속 사진기자로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공동 작성한 사람들이다(이하 피고 3, 4, 5를 '피고 기자들' 이라 하고, 피고 6, 7, 8.을 '피고 사진기자들' 이라 한다).

라.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2011. 4.경 비공개로 거행된 원고들의 양가 가족모임 및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 등을 취재한 후, 2011. 4. 21. ①「[단독] 정용진·○○○, 극비 상견례 포착 ... 신세계 로얄패밀리 총출동」이라는 제목의 별지 1 기재 기사(갑 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기사' 라 한다), ②「[단독] 정용진·○○○, 5월 재혼 임박 ... “친지만 초대, 비공개 결혼”」이라는 제목의 별지 2 기재 기사(갑 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기사' 라 한다), ③「[단독] '신부' ○○○, 청담동 머느리룩 분석 ... “단아한 럭셔리 패션”」이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 기사(갑 3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제3기사' 라 한다), ④「[단독] 정용진·○○○, 비밀 데이트 코스? ... “틈틈이 집 앞에서 만나”」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 기사(갑 3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제4기사' 라 한다), ⑤「[단독] 정용진·○○○, 신혼집은

어디? ... “분당 소재 1,300평 대저택”」이라는 제목의 별지 5 기재 기사(갑 3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제5기사' 라 한다), ⑥「[포토] “즐거운 정용진 vs 수줍은 ○○○” ... 사진으로 본 양가 상견례」라는 제목의 별지 6 기재 기사(갑 3호증의 6, 이하 '이 사건 제6기사' 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이 사건 신문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제6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 라 한다).¹⁾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위와 같은 취재 및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 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각 기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6, 갑 5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들 양가 가족의 상견례 행사와 원고들의 결혼 계획,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 등 원고들의 사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적 인물도 아닌 ○○○의 실명과 이혼 경력, 옷차림 등에 대한 내용까지 적시하고 있는바, 위 각 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적 사항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공표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초상을 포함한 사

1) 피고 사진기자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는데 모두 참여하였는데, 피고 기자들의 경우, 이 사건 제1기사는 피고 기자들 모두, 이 사건 제2, 4기사는 피고 4, 5가, 이 사건 제3, 5기사는 피고 3, 4가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6기사는 피고 사진기자들이 작성한 것이다.

적인 생활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 및 그 가족 사이의 대화를 몰래 엿들어서 인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취재방법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 및 원고 ○○○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게재한 자 또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보도는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경영인으로서 공인에 속하는 원고 정용진의 재혼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들의 사생활에 관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는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도내용에 원고들로 하여금 불안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담겨 있지 않고, 위 각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며, 피고 기자들이 원고들 측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이를 기사화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 ○○○는 실명과 초상 등이 기존의 언론 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됨으로써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하다. 설령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이나 원고 ○○○의 초상권 등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관한 보도로서 공적 인물인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한도 내에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의 보장과 그 한계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를 가짐은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언론기관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하여 특정인의 사적 사항을 보도하는 때에는 외형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져야 하는바,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및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

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 기자들은 ① 이 사건 제2기사에서, 원고들의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소식을 전달하면서, ‘양가 상견례를 마친 원고들의 5월 중순 재혼이 유력해 보이고,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예식장은 웨스틴조선호텔이 유력하고, 원고들 모두 초혼이 아닌 만큼 최대한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 중이며, 신접살림은 분당의 대저택에 차린다. 원고 ○○○는 지난 2003년 회사원과 결혼했다 3년 만에 이혼했다’는 요지를 보도하였고, ② 이 사건 제5기사에서는, 원고들이 앞으로 살게 될 신혼집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신혼집은 분당에 있는 1,300평 규모, 100억 원대의 대저택으로서, 확인 결과 위치나 외관이 모두 수려했고, 주변 환경도 쾌적했다’는 요지의 내용을 원고 ○○○의 이혼경력과 함께 보도하였으며, ③ 이 사건 제1기사에서는, 원고들 양가의 상견례 현장을 묘사하면서, ‘웨스틴조선호텔의 중식당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양가는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 2시간 가량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원고 정용진이 원고 ○○○에게 “수고했다”, “잘 해냈다” 등의 칭찬을 하였는데, 이러한 따뜻한 모습은 평소 데이트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원고 ○○○의 이혼경력과 함께

보도하였고, ④ 이 사건 제3기사에서는, 원고 ○○○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화장 상태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상견례 자리에서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이 “옷 예쁘다”며 칭찬을 하자 원고 ○○○가 “그렇죠? 어머님께서 골라주셨어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는 대화내용을 함께 보도하였으며, ⑤ 이 사건 제4기사에서는, 원고들의 데이트 현장을 묘사하면서, ‘원고들은 틈 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만남장소는 원고 ○○○의 집 앞이었고,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소박했다. 손을 잡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도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진들을 보면, 피고 사진기자들은 ⑥ 이 사건 제3기사에 원고 ○○○의 옷차림 등을 부각시켜 촬영한 사진들을, 이 사건 제4기사에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을 각 수록하였고, 이 사건 제6기사에서는 원고들의 상견례 현장의 분위기를 언급한 후 원고들과 그 가족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수록하였으며, 위 제6기사의 사진들 중 일부를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제5기사에도 각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하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 ○○○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들²⁾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의 침해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로 보도된 내용들은 원고들의 결혼계획과 신혼집의 개요,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과 원고 ○○○의 옷차림 및 이혼경력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서, 이는 그자

2)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제1기사의 경우,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내지 여섯 번째 사진, 아홉 번째 내지 열세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기사의 경우,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3기사 및 제4기사의 경우, 수록된 모든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5기사의 경우 세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6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로 모두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보도된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각 공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각 기사에 수록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 ○○○³⁾의 초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 사진기자들이 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위 사진들이 이 사건 각 기사에 포함되어 공표된 이상,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1) 원고들의 결혼예정 사실 등에 관한 일반적

보도 부분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을 1호증 내지 을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 정용진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의 경영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유명 여배우인 고현정과 결혼을 하면서 그의 기업가로서의 면모 이외에도 결혼을 둘러싼 그의 사생활이 일반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대

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후 원고 정용진은 고현정과 이혼을 하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재계는 물론 사회 일반에서도 위 원고의 재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혼의 상대방이 누구일지 등이 대중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 정용진은 2007년경 개인 홈페이지에서 ‘좋은분이 생기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명하여 스스로 대중의 궁금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의 열애설 및 결혼설이 대두되자 일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원고 ○○○의 실명과 사진, 약력과 가족관계 등이 공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도 이전에도 이미 위 원고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1. 4. 8. 및 2011. 4. 13.에는 위 원고의 이혼 경력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른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용진은 이른바 ‘공적 인물’로서 국내의 유명 여배우인 고현정과 결혼 및 이혼을 통하여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 역시 원고 정용진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 정용진의 사회적인 지위와 대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대중적 관심 자체를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원고 ○○○의 성명과 초상, 경력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5기사 부분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의 원고들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원고

3) 원고들은 원고 정용진에 대한 초상권 침해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들이 거주할 신혼집의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은 일용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부분의 보도로 공개된 원고들의 사생활의 내용 또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흥미 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5기사 부분 중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을 제외한 보도내용은 모두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 등에 관한 세부적

묘사 부분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들에 대한 열애설 및 재혼설이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이미 다루어지고 있었던 점, 원고들의 결혼을 둘러싼 사생활에 관한 사항 역시 일용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3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3, 4, 6 기사의 보도는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원고 ○○○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으로서, 그 중에는 원고들 사이의 내밀한 대화 내용이나 원고 정용진의 가족과 원고 ○○○ 사이의 대화내용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구체적인 보도는 피고 기자들이 위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에서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들에 몰래 접근하여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거나 미행하지 않고서는 수집

하기 어려운 성격의 정보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 서보현은 원고들의 상견례가 끝난 직후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던 호텔 출입문 앞에 접근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원고들 사이의 사적 대화 및 원고 정용진의 가족과 원고 ○○○ 사이의 대화를 엿듣고 이를 기사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사진기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상견례 현장 주변에서 상견례에 참석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을 취재하기 위하여 원고 ○○○의 주거지 앞 등에 잠복하면서 약 2주간에 걸쳐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화장 상태 등을 취재하기 위하여 원고 ○○○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변 길거리 등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 이전에는 이 사건 제1, 3, 4, 6 기사와 같이 원고들의 사적 생활모습을 원고들 주변에서 몰래 관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 없었고,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위 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되자 이를 확인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위 보도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게시해 됨으로써 이후 위 보도내용과 사진들이 다른 언론매체들과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정용진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원고의 재혼에 관한 사항은 그의 과거 결혼 및 이혼경력으로 인하여 대중적 관심사가 되었을 뿐, 원고들이 일반 대중에게 이에 관한 자신들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여 왔다거나 그와 같은 노출을 자발적으로 감수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요소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원고 〇〇〇의 경우에는 원고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정용진과 같은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원고 〇〇〇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은 비록 그 관찰대상의 지점이 호텔 출입문 앞이나 주거지 앞 등과 같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곳에서의 원고들의 사적인 생활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 중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위와 같은 취재의 결과물로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원고 〇〇〇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 및 이를 촬영한 사진들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취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생활 내지 일상생활이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관찰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이를 기록한 결과물이 사회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받는 피해의 정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사실이나 원고 〇〇〇의 옷차림에 관하여 취재함으로써 이를 원고들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을 보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

하고 밀착하여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을 취재하여 이 사건 제1, 3, 4, 6 기사를 각 작성하고, 위 취재 과정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원고들 및 원고들 가족들의 사진을 위 각 기사에 포함시켜 공표한 행위와 이 사건 제2, 5 기사에 위와 같이 무단으로 촬영된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는 사진(이 사건 제2 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여섯 번째 사진과 이 사건 제5기사 중 세 번째 사진)을 포함시켜 공표한 행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〇〇〇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2, 5 기사 중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지는 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3, 4, 6 기사 부분과 이 사건 제2, 5 기사 중 위 사진 부분은 각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〇〇〇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원고들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3, 4, 5, 6, 7, 8은 위와 같이 위법한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게재한 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의 사용자 겸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하는 자로서 각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에 대하여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으나, 피고 2가 위와 같이 위법한 기사의 작성·게재나 편집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의 사용자는 법인인 피고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2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내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의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고, 원고 〇〇〇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3, 4, 5, 6, 7, 8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기사의 게재 방식, 게재된 기사의 내용,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 특히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도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다른 언론매체들과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 정용진에 대하여는 500만 원, 원고 〇〇〇에 대하여는 1,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용진에게 500만 원, 원고 〇〇〇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1. 5.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사 삭제의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기사가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4항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기사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3, 4, 6 기사를 각 삭제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제2, 5 기사 중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 사건 제2 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여섯 번째 사진과 이 사건 제5기사 중 세 번째 사진)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윤명희와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에 대하여도 위 삭제의무의 이행을 구하나, 위 삭제의무는 이 사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만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3, 4, 5, 6, 7, 8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만경

판사 차동경

판사 최미영

■ 별지 기사 모두 생략

[판례 2]

유력 중앙일간지 기사라도 ‘상당성’ 근거가 될 수 없다

〈판결 요지〉

가. 원고 이○○의 위 발언의 의미는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를 하는 주체를 평화적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한정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쇠파이프를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사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제목과 본문을 결합하여 보고,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위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보면, 원고 이○○이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쇠파이프를 들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히고, 결국 원고 이○○이 변론을 통해서 폭력시위를 옹호 내지 정당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이○○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편집하여 보도한 것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

은 면할 수 없으므로(특히,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과장 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하여는 더욱 더 진위 여부를 확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사 건: 2008가합81270 손해배상 등
원 고: 1. 이○○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장○○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조○○
원고2 소송대리인 변호사이○○
피 고: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2. 박○○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강○○
3. 주식회사 조인스닷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황○○
4. 주식회사 세계일보
5. 주식회사 세계닷컴
피고 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강○○, 최○○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 선고: 2011. 9. 9.

1. 가.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일보 사회면의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제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1회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각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박○○,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닷컴은 연대하여 각 2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은 연대하여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9. 6.부터 2011. 9.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박○○,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닷컴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박○○,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닷컴은 연대하여 각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은 연대하여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 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0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의 제1항 신문기사문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2] 정정보도청구문을 위 신문기사문의 본문과 같은 크기의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라.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청구문을 보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은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원고 민변'이라고 한다) 소속 변호사이다.

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2008. 5. 6.부터 개최되었는데, 촛불집회에 참석한 윤○○은 2008. 6. 19. 다른 집회참가자와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버스의 방어판을 떼어내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다. 원고 민변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무료변론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 이○○은 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2008. 6. 30. 열린 윤○○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에서 원고 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부 등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라고 한다) 소속 기자 피고 박○○은 당시 윤○○의 형사재판을 방청하였다.

라. 피고 박○○가 위 공판기일에서 들었다는 원고 이○○의 발언을 토대로 피고 중앙일보는 2008. 7. 1. 중앙일보 사회면에 <시위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라는 제목으로, 원고 민변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료변론을 하기로 한 사실과 윤○○에 대한 재판과정을 보도하면서,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는 비폭력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되는 게 뭐냐’며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별지3] 제1항 기재 기사(기사 작성자는 피고 박○○이다. 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피고 중앙일보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아 인터넷 뉴스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닷컴(이하 피고 중앙일보, 피고 박○○,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닷컴을 통틀어 이하 ‘피고 중앙일보 등’이라 한다)도 같은 날 뉴스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세계일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기사를 바탕으로 2008. 7. 1.자 세계일보 사설란에 <쇠파이프도 괜찮다는 民辯의 일그러진 법리>라는 제목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론하며 피고인의 법률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 있다”고 한 이 변호사(원고 이○○)의 변론은 법률가로서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민변 변호사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중략)… 하지만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는 내용의 [별지4] 기재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을 게재하였고, 피고 세계일보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아 인터넷 뉴스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피고 세계

일보와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을 통틀어 이하 ‘피고 세계일보 등’이라 한다)도 같은 날 뉴스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사설을 게재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08. 7. 2.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래서 그의 무죄 내지는 가벼운 형을 얻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변호인이 어떻게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고 변론하겠나”라고 주장하며 원고 이○○이 변론과정에서 쇠파이프와 관련된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사. 그러자 피고 중앙일보는 위 기자회견에 반박하기 위하여 2008. 7. 3.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민변, 소속 변호사 거짓말 믿었나>라는 제목과 <“쇠파이프 발언 중앙일보가 악의적 왜곡보도” 회견>, <“책임 묻겠다”던 변호사 녹음 확인되자 “노 코멘트”>라는 부제목으로 <그러나 민변의 주장과 달리 본지의 보도는 법원의 재판기록을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법원을 통해 재판 당일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쇠파이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 측 증거자료 대부분이 윤씨와 무관하다”고 반론을 펴면서 “비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라며 변론했다>는 내용의 [별지3] 제2항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고, 2008. 7. 4.자 중앙일보 사회면에도 <‘민변 기사’ 왜곡 보도 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민변 백승헌 회장은 “이 변호사가 쇠파이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으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기사가 있지도 않은 걸 지어내 왜곡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법정에서 들은 걸 그대로 쓴 것이었다. 법원 녹취록만 확인해 봐도 사실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 직후 일부 기자들에게 “솔직히 그런 발언을 한 것도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위 있는 법률가 단체가 이 변호사의 말만 믿고 사실 보도를 비난한 셈이다.>라는 내용의

[별지3] 제3항 기재 기사([별지3] 제2, 제3항 기재 기사도 피고 박○○가 작성하였다. 이 기사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후속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 제14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들

원고 이○○은 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간 평화적인 의사표시로 얻은 것이 무어냐, 이제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변론하여 집회현장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을 뿐 폭력시위를 옹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이○○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고 변론하여 폭력시위를 옹호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기사 및 사설을 작성하거나 보도하였다.

그리고 피고 중앙일보 등은 이 사건 기사 및 사설에 대하여 허위라고 반박한 원고 민변의 기자회견에 관하여 오히려 원고 민변과 원고 이○○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는 재판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후속 기사를 보도하였다.

허위의 이 사건 기사, 사설 및 후속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중앙일보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중앙일보 등

원고 이○○이 형사재판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 박○○가 원고 이○○의 변론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 및 재판기록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와 후속기사는 진실이고 그 내용에 공익성도 있다.

다. 피고 세계일보 등

(1)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이○○의 발언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설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기사는 피고 박○○가 직접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주요 일간지인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이었으므로 피고 세계일보 등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2) 이 사건 사설은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한 의견 또는 논평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기사, 사설 및 후속기사의 허위성 여부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2) 갑 제8 내지 제12호증, 을 가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은 윤○○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에서 “...대다수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했지만, 일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평화적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직접 든 것도 아니고...”라고 발언한 사실, 피고 박○○은 원고 이○○의 위 발언을 듣고 취재수첩에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메모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원고 들은 원고 이○○이 변론과정에서 쇠파이프와 관련된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쇠파이프와 관련된 내용은 허위라는 취지의 반박기자회견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 박○○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이○○의 변론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 박○○은 다시 대법원 공보관에 게 위 녹음테이프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보관은 거절을 하였고 단지 위 녹음테이프에 쇠파이프와 관련된 발언이 있다는 확인만 해 준 사실, 그러자 피고 박○○은 법원의 재판기록과 녹취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원고들의 반박은 거짓이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후속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기사 및 후속 기사가 게재될 무렵 피고 중앙일보는 촛불시위에 대

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의 위 발언의 의미는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를 하는 주체를 평화적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한정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쇠파이프를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사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제목과 본문을 결합하여 보고,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위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 이○○이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쇠파이프를 들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히고, 결국 원고 이○○이 변론을 통해서 폭력시위를 옹호 내지 정당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이○○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편집하여 보도한 것으로 써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 중 쇠파이프와 관련된 원고 이○○의 발언이 사실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사실도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이○○이 변론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하여 평화적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일부 사람들은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고 변론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후속기사 중 원고들의 이 부분과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박○○가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원고 이○○이 ‘쇠파이프와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였음에도 마치 재판기록이나 녹

취록을 통해 원고 이○○의 발언 전체맥락을 확인하고 이 사건 기사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이 사건 후속기사 부분은 역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 민변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무료변론하기로 한 사실과 윤○○에 대한 재판과정을 보도하면서 그 제목을 <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라고 기재하고 있어 원고 민변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본문에 원고 이○○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실도 <쇠파이프도 괜찮다는 민변의 일그러진 법리>라는 제목을 달고 그 본문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의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의 양심과 자질을 언급하고,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고 하여 원고 민변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원고 이○○의 실명도 거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속기사도 이 사건 기사가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보도한 점, 이 사건 기사, 사실 및 후속기사에 앞서 본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사, 사실 및 후속기사는 원고들을 폭력시위를 옹호 내지 정당화하는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의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문제의 부분이 허위인 점 및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 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 사실 및 후속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사실이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한지 여부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반면에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이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실에는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고 한 이 변호사의 변론>이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이 변호사의 변론은 법률가로서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민변 변호사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는 의견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실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세계일보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가) 일반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조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

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특히,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과장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하여는 더욱 더 진위 여부를 확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나) 공익성

이 사건 기사, 사실 및 후속기사는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익단체인 원고 민변 소속 변호인의 발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라 할 것이다.

(다) 진실성 내지 상당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및 후속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 각 기사가 진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 중앙일보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4 내지 제7호증, 을 가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계일보 등은 주요 언론사인 피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이 사건 기사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실을 보도한 점, 이 사건 기사는 취재기자인 피고 박○○가 직접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취재원이 기자 자신인 점, 이 사건 사실은 사실보도보다는 논평에 초점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실은 이 사건 기사를 신뢰하여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도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점, 피고 박○○ 외에도 윤○○에 대한 형사재판을 참관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있었음에도 오직 피고 중앙일보만 원고 이○

○이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점, 이 사건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피고 세계일보 등은 원고들에게 사실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 중앙일보는 촛불시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피고 세계일보 등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 세계일보 등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세계일보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액수

이 사건 기사, 사실 및 후속기사의 위치, 내용 및 분량, 사실 확인을 위한 피고들의 노력의 정도, 이 사건 후속기사가 보도된 경위,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사실 및 후속기사를 게재한 목적, 원고들의 지위, 피고들의 사회적 영향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중앙일보 등이 이 사건 기사 및 후속기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25,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세계일보 등이 이 사건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중앙일보 등은 연대하여 각 25,000,000원, 피고 세계일보 등은 연대하여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인 이 사건 기사, 사실 및 후속기사 보도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08. 9.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9. 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신

판사 전경호

판사 박규도

[별지 3]

제1항 기재 기사-2008. 7. 1.자 중앙일보 기사

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모(35)씨 공판이 열렸다. 윤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세종로에서 전경 버스에 올라가 경찰 방패벽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촛불집회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검찰은 집회 현장에 있던 윤씨 사진을 포함해 경찰 진술과 경찰 피해현황, 집회 전반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 언론 보도 내용 등 50여 가지를 증거목록으로 제시했다. 윤씨 변호인 이○○ 변호사는 시위의 당위성을 주장하다 재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으로 지난달 23일 KBS 본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당한 촛불시위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차원에서 윤씨를 포함해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료 변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재판 과정 요약.

검사: 피고인은 6월 1~2일 시위대 1만5000여 명과 함께 세종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7~8 일에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기도 했습니다. 4200명이 참가한 시위에서 6명가량의 시민과 함께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방호판 5개(시가 1500만원 상당)를 떼어냈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형벌을 가해야 할 행위인지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재판장: 위법성 조각요?

변호인: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이 순수한 의도로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정부가 폭력적으로 규정하려는데 대해….

재판장: 변호인, 법조인이라 잘 아시겠지만 법정은 길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법문에 기록된 문서로만 피고인을 간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변호인: 알겠습니다.

재판장: 검사 측 증거 제시해 주세요. (검사는 현장 사진 위주로 증거 40개 정도 나열)

변호인: 5월 31일에 찍힌 사진 이외에는 대부분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 심지어 어떤 사진에는 피고인이 없는데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동안 집회에서 수집한 모든 폭력 증거를 피고인에게 대입해 과중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 일부는 비폭력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되는 게 뭐냐’며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피고인은 시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윤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생각을 하다 보니 나오게 됐습니다.

재판장: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습니까.

윤씨: 아닙니다.

재판장: 그럼 독자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고 나오게 된 겁니까.

윤씨: 네.

재판장: 전경버스에는 왜 올라갔습니까.

윤씨: 누가 올라가기에 호기심에 올라갔습니다.

변호인: 당시 시위대 일부가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을 보고 ‘프락치 아니냐’고 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기가 프락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공명심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별지3] 제1항 기재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

모두 생략.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일본판례]

상당성 있는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다면 해당 기사의 상당성 또한 인정될 수 있다

<판결 요지>

가. 통신사와 신문사가 기사의 취재·작성·배신 및 게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도주체로서의 일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의 배신기사에 근거하여 신문에 기사를 게재했다면 신문사가 통신사를 취재기관으로 이용하고 취재를 대행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취재를 신문사의 취재와 동일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통신사가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문사가 해당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게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사가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데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 건 : 최고재판소 2009(受)

제2057호 손해배상청구

상 고 인 : 甲

피상고인 : 주식회사 乙 신문사 외 3인

판결선고 : 2011. 4. 28.

원 심 : 도쿄고법 2009. 7. 28. 선고 2007(ネ)

제5006호 판결

제 1 심 : 도쿄지법 2007. 9. 18. 선고 2006(ワ)

제6076호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건은 상고인이 피상고인들이 통신사로부터 배신(配信)받은 기사에 근거한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 피상고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피상고인들은 통신사가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원심에서 적법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상고인은 2001년 당시 A대학 부속 B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의사이다.

(2) 피상고인들은 2002년 7월 5일, 상고인이 2001년 3월 2일 A대학병원에서 수술 도중 상고인의 과실(인공심폐장치 조작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등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로 한다)를 신문에 게재했다.

(3) 피상고인들은 사단법인 '교토(共同)통신사'의 가맹사 직원이며, 이 사건 기사는 피상고인들이 교토통신사로부터 배신받은 기사(이하 '이 사건 배신기사'로 한다)를 취재 없이 거의 그대로 게재한 것인데 그와 관련된 표시(교토통신사로부터 배신받은 기사에 근거한 기사)가 없다.

(4) 교토통신사는 전국의 지역신문사 등을 가맹사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국내 및 국외뉴스를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를 가맹사 등에 배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사는 교토통신사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라 배신기사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배신기사를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게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5) 가맹사는 교토통신사에 사비(社費) 등의 지분을 통해 그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가맹사 총회 등의 내부조직을 통해 교토통신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사의 이사 및 감사의 다수는 가맹사의 임원 등에서 선임되고 있다. 교토통신사에서는 가맹사의 담당자들 참석 하에 경영기획담당자회의, 편집국장회의 등을 개최하며 동사의 업무운영 등에 관한 보고와 의견교환도 한다.

(6) 피상고인들은 자사의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에 복수의 지사 및 지국을 갖고 있으나 해외를 비롯하여 동 지역 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재거점을 갖고 있

지 않다. 교토통신사로부터 가맹사에 배신되는 기사는 통상 하루에 약 1,500개에 이르며, 피상고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에서는 전체 기사의 50~60% 정도를 교토통신사의 배신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상고인의 피상고인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1) 이 사건 기사는 전문의인 상고인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상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으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기사의 게재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으나, 교토통신사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피상고인들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가 통신사에 의해 이행되었을 것임을 기대하고 이에 의거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상고인들은 자신이 발행하는 각 신문에 교토통신사의 배신 기사를 게재했을 경우, 통신사에 의한 취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적시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건에서는 교토통신사가 이 사건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상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소론(所論)은, 원심의 상기 3. (2) 판단에 관해, 명예훼손행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행위주체별로 판단해야 하

므로 피상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에 관해 취재를 하지 않은 이상, 교토통신사가 이 사건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상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1)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최고재판소 1966년 6월 23일 선고 1962년(才) 제815호 제1소법정 판결).

신문사가 통신사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외의 폭 넓은 뉴스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한다는 사회적 의의도 있으며 보도시스템의 한 양상으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보도시스템 하에서는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배신받은 기사의 내용에 대해 취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통신사가 해당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배신받아 신문에 게재한 신문사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면, 보도가 위축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소한 해당 통신사와 신문사가 기사의 취재·작성·배신 및 게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도주체로서의 일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의 배신기사에 근거하여 신문에 기사를 게재했다면 신문사가 통신사를 취재기관으로 이용하고 취재를 대행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취재를 신문사의 취재와 동일시하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통신사가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문사가 해당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게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사가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데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신사와 신문사가 보도의 주체로서 일체성(一體性)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통신사와 신문사의 관계, 통신사로부터 신문사에 기사가 배신되는 구조, 신문사에 의한 기사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의 가부(可否)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논리는 신문사가 게재한 기사에 통신사의 배신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교토통신사의 가맹사는 사단법인인 교토통신사의 경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동사의 경영·업무 등이 논의되는 중요한 회의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동사의 경영체제나 취재체제에도 관여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므로 교토통신사와 가맹사는 조직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전제로 교토통신사는 가맹사 등에 기사를 배신할 목적으로 취재와 기사작성을 하고 있고, 가맹사는 교토통신사로부터 배신되는 기사를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맹사들이 발행하는 기사 중 상당 부분은 교토통신사로부터 배신된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토통신사로부터 가맹사에 배신되는 기사는 하루 약 1,500건이라는 방대한 수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고인과 같은 가맹사는 자사의 신문발행지역 이외에는 취재거점 등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그 모든 것에 대한 취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가 배신기사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재

를 한다는 것은 상정(想定)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가맹사는 자신의 보도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교토통신사의 경영 등에 관여해야 하고 교토통신사는 가맹사를 대신하여 취재와 기사작성을 하고 가맹사는 해당 배신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교토통신사와 가맹사는 기사의 취재·작성·배신 및 게재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보도주체로서의 일체성을 갖는다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토통신사가 이 사건 배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맹사인 피상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피상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6.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보아 원심의 상기 3. (2)의 판단은 시인할 수 있다. 논지(論旨)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판례타임즈』 1347호 / P.89~94

■ 번역: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판례]

일반 시민이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법 집행 공무원(경찰관)을 촬영한 것은 도청법 위반이 아니다. (Glik vs Cunniffe 사건)

〈판결 요지〉

가. 원고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유래하는, 휴대폰을 써서 공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영상 촬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끌어다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정보원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정부 공무원에 관해 전파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부의 공적 사안에 관한 자유토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이익에 봉사한다. 또한 그러한 정보수집은 정부기능의 개선과 남용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한다.

나. 경찰관인 피고들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영상에 담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체포하였는데, 이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수정헌법 제4조의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는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이 대화의 도청을 금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청(interception)”이란 의사소통을 “몰래(비밀)”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주체가 녹음을 실제로 알지 못함을 요하는데, 녹음 장치를 잘 보이게 놓아두는 것은 주체가 녹음을 실제로 알았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 경찰관들의 활동을 휴대폰으로 “공개적으로” 녹음했다고 되어 있고 경찰관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원고가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했었지만 휴대폰이 녹음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위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미연방 제1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irst Circuit)

사건번호 : 10-1764

원고(피항소인) : 사이먼 글릭(Simon Glik)

피고(항소인) : 존 커니프, 피터 새벌리스,
제롬 홀-브루스터, 보스턴시

판결선고일 : 2011. 8. 26.

담당판사 : 토루엘라(Torruella), 리페즈(Lipez),
하워드(Howard)

1심 판결 :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
영(Young) 판사의 판결

결론

시와 경찰관들에 대한 민사소송. 경찰 활동을 녹음한 것을 이유로 체포한 것에서 연유한, 원고의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하는 연방법률(42 U.S.C. § 1983)에 따른 주장, 매사추세츠주 민권법(Mass. Gen. Laws ch. 12 § 11I)상의 주장, 악의적 기소 주장을 포함함

피고들은 면책을 주장했으나 기각되자 본 항소를 제기함. 원심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함

이유

원고 사이먼 글릭은 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몇 명의 경찰관이 보스턴 커먼 공

원에서 한 청년을 체포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원고에 대한 기소는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Massachusetts's wiretap statute) 위반과 다른 2개의 주 법률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데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러자 원고가 [시민적 권리의 박탈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를 허용하는] 연방법률(42 U.S.C. § 1983)에 의거, 소송을 제기하여 경찰관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체포한 것은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¹⁾에서 피고 측 경찰관들은 원고의 헌법적 권리 주장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였다. 우리는 주장된 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촬영하였다는 것과 피고 측이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없이 원고를 체포함으로써 수정헌법 제4조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확인하는 바이다.

I.

우리는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관련 사실들을 열거하고(Asociación de Suscripción Conjunta del Seguro de Responsabilidad Obligatorio v. Flores Galarza, 484 F.3d 1, 6 (1st Cir. 2007)) “소장에서 근거있게 잘 내세워진 주장들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Sanchez v. Pereira-Castillio. 590 F.3d 31, 36, 52 n.15 (1st Cir. 2009).

2007년 10월 1일 저녁, 사이먼 글릭은 보스턴 커먼

1) 미국에서 민사소송의 항소는 종국판결을 기다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예외를 부여하여 예컨대, 당사자 일방의 면책 주장이나 관할권 위반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1심의 종국판결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국판결 전에 일부 쟁점에 대해서 먼저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중간항소라고 한다. 중간항소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역시 항소심 단계에서는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1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종국판결이 내려져서 그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져도 중간항소에서 이미 판결한 부분은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세 명의 경찰관-이들이 본 소송의 개인 피고들이다-이 한 청년을 체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글릭은 다른 구경꾼이 “당신들이 애를 다치게 하고 있다. 그만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체포를 위해 경찰관들이 지나친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우려한 글릭은 대략 10피트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체포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뒤, 경찰관 중 한 명이 돌아서서 글릭에게 말했다. “이제 충분히 찍은 것 같은데” 이에 글릭은 “다 찍고 있어요. 당신이 펀치 날리는 것도”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른 경찰관²⁾이 다가와서는 휴대폰으로 음성도 녹음했는지 물었다. 글릭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경찰관은 글릭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는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을 위반한 불법 녹음(unlawful audio recording)이라며 글릭을 체포했다. 글릭은 보스턴 남부경찰서로 송치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글릭의 휴대폰과 컴퓨터 플래시 드라이브(흔히 USB 메모리라 불리는 장치)를 압수하고 증거물로 보존했다.

마침내 글릭은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 위반(Mass. Gen. Laws ch. 272, §99(C)(1)), 안온 방해(동법, ch. 272, §53(b)), 그리고 범인도주원조(동법, ch. 268, §17)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중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州)는 자발적으로 기소를 철회하였다. 2008년 2월, 보스턴 시법원(the Boston Municipal Court)은 글릭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여 안온방해와 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전자에 대하여, 위 법원은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체포활동이 촬영된 것을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실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를 범죄로 만들지는 못한다’ 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도청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법이 금지하는 것은 비밀녹음(secret recording)이고 경찰관들이 인정하듯 글릭은 그의 휴대폰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또한 잘 보이는 곳에서 영상촬영과 음성녹음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글릭은 체포된 후 보스턴 경찰국(the Boston Police Department)에 내부 진정을 제기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경찰국은 그의 진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2010년 2월, 글릭은 매사추세츠 주 관할 미연방지방법원에 경찰관들과 보스턴시를 상대로 민사소송(civil rights action)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매사추세츠 주 민법(Mass. Gen. Laws ch. 12, §111)에 관련한 주장들과 악의적 기소 주장 이외에도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미연방 법률(42 U.S.C. §1983)에 따른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글릭의 주장들이 근거가 없으며 ‘글릭이 경찰관을 녹화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포행위는 면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연방 민사소송규칙 제12조 (b)(6)에 따라 글릭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재판에서 해당 지방법원은 면책항유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인정하면서 위 주장에 집중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법원은 구두로 피고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우리 미연방 제1순회구(the First Circuit)에서는 ... 공적인 사안에 관해 경찰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녹음(녹화)할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가 확립되어 있다’ 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본 항소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전형적

2) 소장에서는 이 경찰관이 최초로 글릭에게 말을 걸었던 경찰관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

인 기각신청에 대한 부인과 달리, 면책 향유에 근거한 기각신청은 중간심사(interlocutory review) 중에도 즉각 항소할 수 있다(Garnier v. Rodríguez, 506 F.3d 22, 25 (1st Cir. 2007); “소송의 가장 이른, 초기 단계에서 면책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Hunter v. Bryant, 502 U.S. 224, 227 (1991)(법정의 견(per curiam)) 참조). 우리는 우리의 심사 범위를 면책향유에 한정하지만(Garnier, 506 F.3d at 25) 우리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이 심사할 것이다(Raiche v. Pietroski, 623 F.3d 30, 35 (1st Cir. 2010)).

II.

헌법재판의 오랜 원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의 재량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Harlow v. Fitzgerald, 457 U.S. 800, 807 (1982); Barton v. Clancy, 632 F.3d 9, 21 (1st Cir. 2011) 참조). 이러한 면책향유 이론은 ‘공무원이 권한을 무책임하게 행사할 때 책임을 지을 필요성’과 ‘그들의 의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때 괴롭힘, 소동, 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이익을 형량한다(Pearson v. Callahan, 555 U.S. 223, 231 (2009)). 우리는 면책향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2단계 분석법을 사용한다(Maldonado v. Fontanes, 568 F.3d 263, 269 (1st Cir. 2009)). 그 2단계는, 물론 어떤

순서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즉, (1) 원고가 주장 혹은 증명한 사실이 헌법상 권리침해를 구성하는가, (2) 만약 그렇다면 그 권리는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때에 ‘명확히 확립되었는가(plainly established)’ (Maldonado, 568 F.3d at 269)이다.

‘권리가 명확히 확립되었는가’에 관한 후자의 분석은 더 깊게 들어가서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시민적 권리침해가 주장될 당시 법의 명확성’, 그리고 (2)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피고라면 그의 행위가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가’ (Maldonado, 568 F.3d at 269)를 인용하는 Barton, 632 F.3d at 22 참조(원문에 변경을 가함)).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곧바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선례는 이... 헌법적 문제들을 논쟁의 여지없이 해결했음에 틀림없다’ (Ashcroft v. al-Kidd, 131 S. Ct. 2074, 2083 (2011)). 사실, ‘중요한 문제는 권리침해가 주장되는 당시에 법의 상태가 피고에게 그의 특정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Maldonado, 568 F.3d at 269).

항소에서, 항소인들³⁾은 글릭의 헌법적 권리 주장 각에 대해 모두 자신들에게 면책향유권이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원심 지방법원은 자신들의 기각신청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⁴⁾ 그들의 주장은 ‘명확히 확립된 권리’ 분석법의 두 부분을 그대로 쫓

3) 비록 본 항소에 보스턴 시가 항소인으로 올라 있기는 하지만, 시는 경찰관들의 면책향유라는 방어방법을 주장한 적도,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면책 부인으로 인한 즉각적 중간재판의 항소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데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Walden v. City of Providence, 596 F.3d 38, 55 n.23 (1st Cir. 2010)을 보라). 그러므로 이하에서 항소인들이라고 지칭하는 경우, 그것은 오로지 면책 향유를 부인당한 개인 피고들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4) 항소인들은 또한 도청법 위반으로 글릭을 기소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글릭이 악의적 기소 주장을 제기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글릭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 주장제기의 실패를 이유로 기각을 신청했으나 부인당한 경우에는, 즉각적 항소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장은 다루지 않는다.(Bonitz v. Fair, 804 F.2d 164, 173 (1st Cir. 1986)을 인용하는 Domegan, v. Fair, 859 F.2d 1059, 1061-62 (1st Cir. 1988)을 보라: “우리가 비록 중간에 면책향유의 부인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방법원에 제기되고 기각된 [모든] 추가적 청구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중간판결의 항소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종국재판에서 일괄적으로 재판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수판결의 요건(collateral-order exception)을 갖추어야 한다.’”(원문을 변경함).

아가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경찰관이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촬영할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확립시키는 법의 명확성에 대해 다툰다. 수정헌법 제4조 권리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주의 도청법을 해석한 매사추세츠 주 판례법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찰관이라면 글릭을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 체포가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우리는 순서대로 각 주장을 검토할 것이다.

A. 글릭의 수정헌법 제1조 주장과 항소인들의 면책 여부

1.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한 글릭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양 당사자들이 이 점에 대해 공방을 펼치고 있듯, 수정헌법 제1조상의 쟁점은 상당히 좁다.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촬영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가? 본 법원과 다른 연방법원들의 판결로부터 이끌어 낸 판례법과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원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그렇다’ 고 답한다.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금지한다는 문언을 넘어 정보의 수집과 전파에 관련된 행위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 미연방대법원이 실시하듯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과 개인의 자기표현의 보호를 넘어 정부로 하여금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져다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집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First Nat’l Bank v. Bellotti, 435 U.S. 765, 783 [3 Med.L.Rptr. 2105] (1978)); 또한 Stanley v. Georgia, 394 U.S. 557, 564 (1969) 참조: “헌법이 정보와 관념을 수령할 권리(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nd ideas)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 공적 정보의 집적을 보호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이익의 귀결은 바로 ‘법에서 허용한 방법에 의해 어떤 정보원로부터든지 뉴스를 수집할 권리(right to gather news)가 의심의 여지없이 존재한다’는 것이다(Branzburg v. Hayes, 408 U.S. 665, 681-82 [1 Med.L.Rptr. 2617] (1972)를 인용하는 Houchins v. KQED, Inc., 438 U.S. 1, 11[3 Med.L.Rptr. 2521] (1978) 참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포함하여,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을 촬영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헌법적 보호의 원리에 충분히 부합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이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촉진하고 보호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주요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Mills v. Alabama, 384 U.S. 214, 218 [1 Med.L.Rptr. 1334] (1966)). 더욱이, 법원이 지적해 왔듯 ‘표현의 자유는 정부와 관련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국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반대를 억누르고 억압적인 권한을 더 효과적으로 휘두르고자 하는 특별한 유인을 가지기 때문(토마스 에머슨(Thomas Emers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9 (1966))을 인용하고 있는 First Nat’l Bank, 435 U.S. at 777 n.11(원문을 변경함) 참조)이다. 이것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잘 들어맞는 말인데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 버릴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일반 공중은 경찰과 검찰에 부여된 재량권이 책임 있게 행사되는 데에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실시하는 Gentile v. State Bar of Nev., 501 U.S. 1030, 1035-36 (1991) 참조). 일반 공중이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권한남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적 이익이 “정부의 그릇된 행위라고 주장되는 것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위 판례, at 1034-

35 참조), 보다 일반적으로는 정부 기능을 건전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공중의 감시 아래서 정부의 많은 업무수행과정들은 최상으로 운영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Press-Enter. Co. v. Superior Court*, 478 U.S. 1, 8 [13 Med.L.Rptr. 1001](1986) 참조).

이러한 원리들과 부합되게 우리는 앞에서 공무원을 촬영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의 행사임을 인정했다. 야코부치 판결(*Iacobucci v. Boulter*, 193 F.3d 14 (1st Cir. 1999))에서 한 지방 저널리스트는 역사유적지구위원회(historic district commission)의 공공회의장 밖의 복도에서 공무원들을 촬영하다가 체포되었는데, 이 체포를 이유로 연방법률(§1983)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위원들은 원고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에 반대했다(동판결, at 18). 원고가 그 만두려 하지 않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질서방해행위를 이유로 그를 체포했다. 나중에 그 기소는 기각되었다. 비록 원고가 그 후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1983조 소송이 대체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었고 수정헌법 제1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판결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면책항유가 부정된 데 대해 상소를 제기한 것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원고의 언론인으로서의 행동은 ‘평화적이었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었으며,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경찰관은] 그것을 제지할 권한이 없다’고 실시한 점에 주목한다(동판결, at 25(강조를 부가함)).

수정헌법 제1조가 정부 공무원을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을 보호한다고 보는 우리의 인식은 다수의 연방순회구(circuit) 내지 지방법원들의 판결에 부합한다(예컨대, *Smith v. City of Cumming*, 212 F.3d 1332, 1333 [28 Med.L.Rptr. 1959] (11th Cir. 2000)를 보라: “수정헌법 제1조는 공무원이 공적 소유물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와 특히, 공익적 사안들을 녹음, 녹화할 권리(right to

record)를 보장한다.”; “공익적 사안들을 촬영할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라고 언급하고 있는 *Fordyce v. City of Seattle*, 55 F.3d 436, 439 [23 Med.L.Rptr. 2011] (9th Cir. 1995); 일반이 접근가능한 케이블 쇼의 출품인이 자신의 집 밖에 나온 공무원을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원고는 공익적 사안들을 녹화할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Demarest v. Athol/Orange Cmty. Television, Inc.*, 188 F. Supp. 2d 82, 94-95 [30 Med.L.Rptr. 1545] (D. Mass. 2002); 텔레비전 뉴스 기자가 범죄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경찰이 방해하고 비디오카메라를 압수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불법적인 사전억제를 구성한다고 실시하고 있는 *Chanel 10, Inc. v. Gunnarson*, 337 F. Supp. 634, 638 (D. Minn. 1972); 비교판례로는 뉴스 리포터와 사진기사의 “뉴스 수집과 보도 및 사건을 촬영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소송에서 주장의 실패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을 뒤집은 *Chanell v. City of Chi.*, 407 F.2d 1084, 1085 (7th Cir. 1969)가 있는데, 이 판결은 *City of Kenosha v. Bruno*, 412 U.S. 507 (1973)에 따라 다른 근거들에 기초하여 파기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방해한 경찰서장에게, 수정헌법 제1조 주장으로부터의 면책항유를 부인한 *Connell v. Town of Hudson*, 733 F. Supp. 465, 471-72 [17 Med.L.Rptr. 1803] (D.N.H. 1990)).

야코부치 판결이나 위에서 인용한 많은 판결들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람이 기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수정헌법 제1조의 뉴스를 수집할 권리는, 법원이 자주 언급했듯이, 단순히 뉴스 미디어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언론사의 접근권과 함께 가는 성질의 것이다(Houchins, 438 U.S. at 16(Stewart 판사의 동조 의견)은 헌법은 “일단 정부가 공개의 문을 열어 놓는다면, 일반 공중과 언론사의 접근을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다른 법원들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수정헌법 제1조의 촬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일반인 관련 판결들을 꽤 찾아볼 수 있다(예컨대, Smith, 212 F.3d 1332; 개인 소유지에서 경찰 활동을 촬영한 개인을 체포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실시하고 있는 *Robinson v. Fetterman*, 378 F. Supp. 2d 534 (E.D.Pa. 2005); 교사가 학교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근무 환경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은 공적 관심사라고 본 *Cirelli v. Town of Johnston Sch. Dist.*, 897 F. Supp. 663 (D.R.I. 1995)를 보라). 더욱이, 그동안 기술 분야와 사회에서의 변화는 일반인과 언론인의 명확한 구별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비디오 촬영 기능을 갖춘 전자장치들의 대중적 확산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현재 사건들에 관한 많은 이미지 영상들이 전통적인 촬영 전문가들이 아니라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제공된다는 것이고, 또한 뉴스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대형 신문의 기사만큼이나 컴퓨터 상의 블로거들로부터도 마구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수정헌법 제1조의 뉴스수집권의 보호가 왜 전문적 영역에 대한 신뢰나 기존의 지위에만 안주하여 국한될 수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분명, 촬영할 권리에도 한계가 없지는 않다. 시간, 장소, 그리고 방식에서 합리적인 제한은 부가될 수 있다(Smith, 212 F.3d 1333).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제한을 더 탐구할 필요가 없다. 소장에서 주장된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글릭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한 것은 충분히 헌법이 보호하는 영역범위 안에 놓여 있다. 글릭은 피고 경찰관들을 보스턴 커먼에서 촬영하였는데, 보스턴 커먼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된 도시 공원이며 이상적인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공적 영역의 유서 깊은 장소에서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주(州)의 권한은 ‘극도로 제한된다’ (*Perry Educ. Ass’n v. Perry Local Educators’ Ass’n*, 460 U.S. 37, 45 (1983)). 더욱이, 야코부치 판결에서처럼 소장은 글릭이 “[경찰관들을] 편안한 거리에서 찍었고” “전혀 말을 걸거나 방해한 바 없음”(경찰관들이 말을 건네자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한 것을 빼면)을 밝히고 있다(193 F.3d at 25).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체포행위에 대한 평화적인 녹화는 합리적으로 제한을 부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찰관들은 시민들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함에 의해 부과하는 중대한 부담을 용인하도록 기대된다(*City of Houston v. Hill*, 482 U.S. 451, 461 (1987)을 보라: “수정헌법 제1조는 상당한 정도의 언어적 비판과 도전이 경찰관에게 향해지는 것을 [허용하고] 보호한다.”). 진실로 ‘체포행위를 위태롭게 함이 없는 정도로 개인들이 경찰 활동에 대해 말로 저항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자유는 바로 그것에 의해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와 경찰국가를 구별할 수 있는 주요한 징표들 중의 하나’ (위 판결, at 462-63)이다.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의사표현행위에 맞닥뜨린 법집행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Terminiello v. Chicago*, 337 U.S. 1, 4 (1949)를 인용하고 있는 위 판결, at 461), 그들이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비디오 녹화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고, 공적 영역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받고 있지 않는 한 감내하고 스스로 억제할 것이 기대된다.

2. 촬영할 권리가 명확히 확립되었는가?

비록 ‘명확한 확립’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직접적인 쟁점이었던 선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al-Kidd, 131 S.Ct. at 2083)’ 우리는 야코부치 판결에서 그러한 사

례를 가지고 있다. 야코부치 판결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논의의 간결함인데 이는 국가공무원이나 공적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안에 대한 촬영권을 인정해온 다른 연방순회구 법원들의 판결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Smith, 212 F.3d at 1333; Fordyce, 55 F.3d at 439를 보라). 이 간결함은 암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 이 영역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실질적인 자명성(self-evident nature)을 말해 준다(일부 헌법 위반 행위들은 ‘자명’해서 구체적인 판례법상의 입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는 Lee v. Gregory, 363 F.3d 931, 936 (9th Cir. 2004)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침해 주장 당시의 법률 상태가 피고[들]에게 [그들의] 구체적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충분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고 결론내리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Maldonado, 568 F.3d at 269).

우리는 항소인들이 체포 당시에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는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두 개의 판례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글릭을 체포한 뒤에 판시된 것들이다. 첫 번째는 미공간(未公刊)의 미연방 제4항소법원의 법정 의견으로 사실이나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 없이 ‘공적 소유물에서의 경찰 활동을 녹화할 권리는 본 연방순회구에서는 행위 시로 주장되는 때에 명확히 확립되지 못했다’고 요약적으로 결론짓고 있다(Szymecki v. Houck, 353 F.App’x 852 (4th Cir. 2009)). 그러한 미공간의 의견은 ‘선례로서의 효력이 없고’ (Merrimac Paper Co. v. Harrison (In re Merrimac Paper Co.), 420 F.3d 53, 60 (1st Cir. 2005); 또한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는 United States v. King, 628 F.3d 693, 700 n.3 (4th Cir. 2011)도 참조),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위 판결(Szymecki)이 가졌을 수도 있는, 최소한의 설득적 가치마저 부여하지 못하게 한다.

항소인들이 인용하고 있는 두 번째 판결은 미연방 제3항소법원의 의견으로 정차 명령(traffic stop)의 상황—‘본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특징지어진다—에서는 촬영할 권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Kelly v. Borough of Carlisle, 622 F.3d 248, 262 [38 Med.L.Rptr. 2473](3d Cir. 2010)). 이 판결(Kelly)은 그 사실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될 수 있다. [갓길에 차를 대어 멈추도록 하는] 정차 명령은 보스턴 커먼에서의 체포와는 그 주장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그럼에도, 비록 이들 판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의 명확성 여부에 관해 연방 항소법원의 의견을 분열시키려 하지만 그러한 분열은 우리 연방 순회구에서는 글릭을 체포할 당시에 항소인들에 의해 침해된 권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우리의 결론을 동요시키지 못한다(‘이 ...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법원들이 아직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 하더라도 우리 제1연방순회구에서는 헌법적 권리로 명확히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한 Newman v. Massachusetts, 884 F.2d 19, 25 (1st Cir. 1989) 참조).

요약하면, 비록 그것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법집행 공무원을 포함하여-을 촬영할 시민의 권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핵심적이며, 잘 확립되어 있는 자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글릭의 수정헌법 제1조 주장에 대해 항소인들이 면책 항유로 항변하는 것을 부정한 원심 지방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

B. 글릭의 수정헌법 제4조 주장과 항소인들의 면책 여부

1. 글릭의 수정헌법 제4조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여기서 주장된 사실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

인가 여부는 매사추세츠 주 법의 문제에 달려 있다. 수정헌법 제4조는 체포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Martínez-Rodríguez v. Guevara, 597 F.3d 414, 420 (1st Cir. 2010)). 즉, ‘체포 시 경찰관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상황이 ... 사려 있거나 혹은 합당한 주의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용의자가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믿기에 충분함을 보증하는 것(Michigan v. DeFillippo, 443 U.S. 31, 37 (1979)를 인용하는 Holder v. Town of Sandown, 585 F.3d 500, 504 (1st Cir. 2009))’ 이어야 한다. 클릭이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한 주장으로 제출한 것은 항소인들이 클릭을 체포할 당시에 클릭의 주 법 위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항소인들은 클릭이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을 위반한 점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소장에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⁵⁾ 주 법률과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관련 판례법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항소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 도청법은 ‘고의적으로 ... 유선 통신 혹은 구두(口頭)의 의사소통을 도청(interception)하는 것’을 범죄로 정하고 있다(Mass. Gen. Laws ch. 272, §99(C)(1)). 주 대법원이 지적했듯, 이 법은 그 금지범위가 프라이버시로 합당하게 기대되고 있는 통신

이나 의사소통을 녹음(recording)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유사한 법률보다 더 광범위하게 금지영역을 설정하고 있다(Commonwealth v. Hyde, 750 N.E.2d 963, 967-68 & n.5 (Mass. 2001)를 보라).⁶⁾ 그 범위를 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도청(interception)’인데, 이는 ‘의사소통의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사람이 아닌 자가 타인들의 유선통신이나 구두 의사소통의 내용을 도청장치를 이용하여 몰래 듣고, 몰래 녹음하는 것 혹은 남이 몰래 듣거나 몰래 녹음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위 법, §99(B)(4)).

그렇다면, 여기서 관련되는 문제는 소장에서 주장된 사실로 볼 때 클릭이 ‘몰래(secretly)’ 항소인인 경찰관들을 비디오테입에 담았는가이다.⁷⁾ 주 대법원은 당사자 주체들이 녹음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녹음은 ‘몰래’ 행해진 것이라고 하였다(Commonwealth v. Jackson, 349 N.E.2d 337, 340 (Mass. 1976)). 또한 주 대법원은 ‘주체들의 주관적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실제 알고 있었는지’를 ‘그러한 인식의 객관적 표출’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고 하였다(동 판결, at 340-41). [그러나] 더 나아가, 주 대법원은 ‘실제로 알았다’고 하기 위해 녹음 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언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5) 항소인들은 클릭을 체포한 다른 두 가지 좌-안온방해와 범인도주의 원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6) 하이드 판결에서, 피고는 자신이 경찰관들을 녹음한 것은 도청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 “경찰관들이 피고 자신에 대한 대응을 위해 그들끼리 대화하는 것은 아무런 프라이버시 이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750 N.E.2d at 965). 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배척했는데, 법률은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를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밀 녹음의 금지는 “사회 일반인과 교섭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녹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동판결, at 967). 따라서 본 사건에서, 클릭이 녹음하고 있는 대화주체가 경찰관들이라는 점은 도청법의 적용가능성 문제를 판단함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클릭은 또한 법규정의 용어가 “고의적으로(willfully) 도청을 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강조 부가). 그리고 주장하기를, 자신의 녹음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을 체포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카메라를 잘 보이게 들고 있었고, 그가 소리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관이 물어왔을 때 기꺼이 알려 줬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련 판례는 법이 정하고 있는 고의는, 녹음에 대한 고의일 뿐, 녹음을 숨기는 것에 대한 고의가 아님을 보여준다.(Commonwealth v. Ennis, 785 N.E.2d 677, 681 (Mass. 2003). 이 판결에서, 교정국(the Department of Correction)이 참가인들에게 대화가 녹음될 것이라고 명백히 알려 온 상황하에서, 교정국이 전화통화를 “고의적으로 녹음했다”고 밝히고 있음을 보라). 소장의 주장을 살펴보면, 클릭이 피고들의 체포행동 상황을 녹음하려고 의도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 점에 대한 클릭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동 판결, at 340: “대화를 녹음하는 사람은 대화 주체들에게 도청장치 사용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알고 있음을 확인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위의 하이드 판결(Hyde)에서는 피고가 정차 명령 상황을 몰래 녹음하여 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주 대법원은 ‘만약 피고가 “녹음기를 잘 보이게(in plain sight)”만 두었다라도, 법률의 의미상 녹음이 몰래 행해진 것은 아니었을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잭슨 판결(Jackson)을 근거로 하는 이 하이드 판결의 분명한 논리는 몰래(비밀) 여부의 심사는 인지(認知)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즉 누구나 녹음 장치가 잘 보이게 놓여 있는 경우와 같은 객관적 징표들에 근거해서 대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주(州) 對 리베라 판결(Commonwealth v. Rivera, 833 N.E.2d 1113(Mass. 2005))은 그 점을 더욱 강하게 설명해 준다. 거기서는 범인인 피고가 도청법에 따를 때 편의점의 안전 카메라가 음성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이 은폐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의 논리는 안전 카메라가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도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실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록 사건이 다른 근거에 의해 해결되었지만, 주 대법원 7인의 대법관 중 4인은 주 도청법상 안전 카메라가 잘 보이게 설치된 곳에서는 피고가 오디오 녹음 기능을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서 녹음을 ‘몰래’ 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동판결, at 1125. 판사 코윈(Cowin, J.)은 부분적으로 동조하면서 “피고가 카메라가 오디오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공개적으로 행해진 이 녹음을 매사추세츠 주도청법이 금지하는 ‘몰래한’ 도청으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동판결, at 1130. 판사 코어디(Cordy, J.)도 동조하면서, “주 법의 의미와 취지상, 단지 총을 든 강도가 바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감시 카메라가 자신의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 그 녹음이 비밀녹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소장에서는 글릭이 자신의 휴대폰을 써서 ‘공개적으로 경찰관들을 녹음’ 했고, 더 나아가 ‘경찰관들도 글릭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녹음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아도, 이 행위는 결코 도청법이 겨냥하고 있는 몰래 행해진 비밀 녹음이 아니다(Jackson, 349 N.E.2d at 339를 볼 것: “모든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99A)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청법이 사적 개인들의 전자 감시 장치 이용을 통제하고자 제정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법에 의한 제한은 오직 그러한 장치를 **몰래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음이 명백하다”(강조 부가)). 더욱이, 하이드 판결이 (리베라 판결(Rivera)의 동조 의견과 함께) 여기서와 같이 녹음 장치를 ‘잘 보이도록’ 사용하는 경우는 녹음을 실제로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경찰관들도 행동을 통해 글릭이 자신들을 녹음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용의자를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뒤 한 경찰관이 글릭에게 다가간 말이 그렇다. “이제 충분히 찍은 거 같은데”

경찰관들은 글릭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서 자신들이 녹음을 인지하기는 불충분했다고 항의한다. 그들은 하이드 판결에서 사용되었던 녹음기와 달리 휴대전화는 다수의 개별기능들 예컨대, 문자 메시지, 인터넷, 비디오 게임, 사진 등을 갖추고 있어 한 개인이 자신의 몸 앞에다 휴대폰을 보이게 들고 서 있다는 것이 어떤 특정된 의미를 전달해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실제적, 법률적으로 결함이 있다.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글릭의 감시를 알고 있었고 글릭이 휴대폰으로 자신들을 뭔가의 방식으로 담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글릭에게 음성도

녹음했느냐고 물었던 점에 비추어 그들은 휴대폰이 음성 녹음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휴대폰이 기타 다른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따라서 글릭의 녹음이 ‘몰래’ 한 것이냐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항소인들의 주장은 비록 그들이 글릭의 휴대폰 촬영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에 글릭이 동영상이나 음성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으로 좁혀진다. 이것은 바로 리베라 판결(Rivera)에서 4인의 동조의견에 의해 채택된 주장과 거의 같고, 하이드 판결(Hyde)의 논리인 ‘잘 보이게 놓여진’ 카메라 이론에 직접적으로 상치된다. 항소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 보면, 하이드 판결에서 피고의 녹음은 그가 그의 녹음기를 잘 보이게 놓아 두고 **그에 더해**서 경찰관들이 그 장치가 스위치가 눌러져 작동중이고 소리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적극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도청법 위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실제 하이드 판결은 일반적으로 녹음기로 알려진 장치를 잘 보이게 놓고 사용하면, 그 자체로 대화주체들이 녹음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피고가 경찰에 현장을 녹음하겠다는 의도를 알리기만 했더라도 **혹은** 녹음기를 잘 보이게만 놓았더라도” 법의 의미상 그 녹음은 몰래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설시한 750 N.E.2d at 971을 볼 것. (강조 부가)). 간단히 말해, 법과 판례법의 올바른 해석은 녹음기로 알려진 장치를 잘 보이게 해서 녹음하는 경우는 ‘몰래’ 한 비밀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장의 사실들에 관해 매사추세츠 주도청법의 해석상 글릭의 녹음은 ‘몰래’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들은 그를 체포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소장에 적힌 바대로 글릭의 수정헌법 제4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2. 상당한 이유의 부재가 그 상황에서 명확히 확립되었는가?

항소인들의 주장은 글릭의 행위가 사실상 도청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법 규정의 상태를 볼 때, 합리적인 경찰관이 소장에서 제시된 그러한 상황에서 도청법 위반으로 글릭을 체포하는 것이 과연 글릭의 수정헌법 제4조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보다 영장 없는 체포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한 면책을 향유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가 경찰관의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더 경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웁다(Cox v. Hainey, 391 F.3d 25, 31 (1st Cir. 2004))*를 볼 것). 경찰관들은 ‘상당한 이유의 존재가 적어도 주장될 수 있을 정도라면(so long as the presence of probable cause is at least arguable)’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Prokey v. Watkins, 942 F.2d 67, 72 (1st Cir. 1991)*)을 인용하는 *Ricci v. Urso, 974 F.2d 5, 7 (1st Cir. 1992)* 참조).

(그러나) 상당한 이유의 존재가 여기서는 주장조차 될 수 없다. 소장의 주장들은 글릭이 공개적으로 경찰관들을 촬영했다는 점과 글릭이 그들을 그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증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합리적인 경찰관이 단지 소리가 녹음되었는지 여부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공개적인 촬영행위를 ‘몰래’ 한 비밀행위라고 결론지을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계에서 경찰관들은 글릭의 수정헌법상 권리주장으로부터 면책을 향유할 수 없다고 본 원심 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

III.

위에서 제시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항소인의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지방법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인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 -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제4조 -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수색·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 일러두기: 본문의 이해를 위하여 말미에 미연방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를 부기하였음.

■ 출처 : 『Media Law Reporter』

Vol.39 / P.2257~2264

■ 번역 : 양태건(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독일판례 1]

국가기관이 개인의 의견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평 등을 통해 비판하는 것은 금지된다.

〈판결 요지〉

협회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와는 무관하게 일반적 인격권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시민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그의 주장에 대해 폄훼하여 평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러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특정 저자에 대해 그의 주장이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고 오히려 폐기되어질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경우이다.

판례번호 : 연방헌법재판소, 2010. 8. 17. 자

결정 (1 BvR 2585/06)

관련조문 : 독일연방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

사실관계

1. 본 헌법소원은 연방정치교육센터(이하 '연방센터'라 함)의 공식적 표현에 대한 배제청구권이 행정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면서 제기된 사안이다.

헌법소원 제기자(이하 '소제기인'이라 함)는 모 대학의 정치학과 명예교수이다. 그는 연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기본법과 역사 속에서 독일의 정체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작성, 2004년 사설 출판사인 Bertelsmann에서 출판되는 '독일의 기록'이라는 잡지에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특히 나치시대 독일 주 민사회에서의 반유대주의의 확산을 다루었는데, 그는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독일인 대다수가 유대

인을 적대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받는 유대인을 동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연방센터는 위 논문이 게재된 잡지가 2004년 4월 1일부로 수천 명 이상의 독자에게 전달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그 논문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 연방센터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다음 날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표하였다.

[친애하는 '독일의 기록' 잡지 독자 여러분께, 연방센터와 W.Bertelsmann 출판사는 '독일의 기록' 잡지의 2004년 2호에 게재된 "기본법과 역사 속에서 독일의 정체성"이라는 글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는 연방센터나 출판사의 입장과 달리 독일의 20세기 당시 반유대주의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센터는 수십 년 전부터 나치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위와 같은 논문 등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Bertelsmann 출판사에 잡지 출판 업무를 위임한 저희 연방센터나 잡지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출판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호에 소제기인 Prof.Dr.B의 독일에서의 반유대주의의 영향과 의미에 관한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잡지의 여분은 파기되었습니다. 두 기관과 '독일의 기록' 잡지의 오랜 역사에서 볼 때 이러한 과정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잡지의 독자를 비롯하여 해당 논문을 통해 모욕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Köln 행정법원에 대한 소에서 소제기인은 독일 정부(연방센터)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2004년 4월 2일자 서면의 수신자에게 그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06년 1월 13일

자로 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제기인은 연방센터의 서면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연방센터의 서면은 소제기인의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보호되는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해당 서면은 사실에 반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주장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위법한 방법으로 소제기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치판단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방센터의 서면이 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역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소제기인은 이 서면으로 인해 자신의 학문적 연구나 이를 전달하는데 침해받은 것이 아니다. 소제기인의 학자로서 명성이 서면으로 인해 훼손되었다는 것으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학문의 자유가 학자의 전문가로서의 명망이나 평판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제기인의 항소청구에 대하여 Nordrhein - Westfalen 주(州)의 고등행정법원은 2006년 9월 13일자로 기각하였다. 기각 이유는 항소의 근거로 제기된 소제기인의 주장이 항소허용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특히 소제기인의 이의제기가 행정법원의 결정이 갖는 정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제기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2004년 2월 4일자 서면이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해당 서면이 연방센터의 입장에 따라 반유대주의의 입장이 강요되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나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됨과 동시에 남은 여분의 부수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나는 낙인이 찍혔다. 연방센터의 이러한 행위는 기껏해야 과도한 학문적 탈선의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나, 이러한 상황이 본 논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

방센터는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억압 내지 통제하려 할 뿐이다. 해당 서면이 발표된 이후 나는 학문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또한 해당 잡지사는 차후로 나의 글을 더 이상 게재할 수 없음을 알려왔다. 나아가 수많은 강연행사가 취소되었다.”

판단이유

본 헌법소원은 소제기인의 기본권 실현이 문제된 만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a조 제2항 b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한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c조 제1항 1문 및 제93a조 제2항).

연방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기본법상의 논점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본 헌법소원은 수용되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c조 제1항의 의미상 명백한 근거가 존재한다.

1. 대상 판결은 소제기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재판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BVerfGE 82 S. 236 [269])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명예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즉 일반적 인격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명예훼손적이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개인의 명성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표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어쨌든 이러한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에 대해 폄하하는 표현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에 의해 주장된 의견을 무시하는 식의 논평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그러한 부정적 영향은 연방센터의 발표한 본 사안의 서면에서도 발생한다. 법원에 의해서는 해당 서

면이 소제기인에 대한 비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점과 무관하게 그 내용에 있어서 연방센터의 견해대로 소제기인이 자신의 논문을 가지고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논문의 공개가 개별 입장의 공개적 모욕으로 비춰지는데다 동시에 대중의 상당수가 이러한 일회성 출판을 통해 모욕감을 느끼고 이러한 주제와 거리를 두면서 인쇄행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점도 존재한다. 연방센터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기록’이라는 잡지의 평균적인 독자입장에서 볼 때, 소제기인은 논문의 저자로서 더 이상 논리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독일 역사에 특히 반유대주의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주제가 소제기인의 경우에서 강연행사가 취소되는 등의 명백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당사자를 심각하게 낙인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당 서면이 소제기인이 마치 나치주의적 또는 반유대주의적 견해를 주장한 것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행정법원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는 본 사안에서 큰 의미가 없다.

문제가 된 기본권침해의 경우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침해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인 규제효과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센터의 표현이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하여 합법적인 목적에 의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대상이 되는 행정법원의 판결의 잘못된 표현방식과 달리 그와 같은 정당화 사유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사인간의 법적 분쟁에서와 달리 연방센터의 기본권 부재로 인해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연방센터 활동의 근간이 되는 청구권의 근거가 의미를 갖는다. 이점에서 특별한 법적 침해권한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가

기관의 정보행위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임무가 주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즉 연방정부는 시민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민주주의적인 의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센터가 정치적 논쟁에 대한 대중적 공개토론을 운영해야 하도록 연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기본법상 수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자질과 대표성과 같은 기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방센터의 경우 정치적 사안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이나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의견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본 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제기인의 입장에 대한 순수한 무시가 아니라 소제기인을 독자와 명확하게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점이다. 사실 연방센터의 합법적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제3자와 관련된 표현을 통해 관청으로서의 구상이나 개념을 확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시민의 의견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법치국가적 임무수행에 있어 허용된 목적과 관련하여 그 한계가 문제가 된다. 오로지 사자(死者)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나, 연방정부의 공식적 입장 등은 처음부터 배제된다. 오히려 개별 신뢰성과 정직에 대한 공적 신뢰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섭이나 개입행정을 하지 않고 법적인 제재 대신 시민의 정보를 다루는 것이 주된 임무인 연방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는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균형 있는 명성도 자신의 활동 근거가 된다. 위협적으로 신뢰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공개적 반응으로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방센터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들에 있어서는 상당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된 서면은 연방센터에게 주어진 관심

사에서 벗어났다. 사실 소제기인에 의해 주장된 주제가 비록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서 형사처벌이나 반체제적인 한계를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방센터의 사실판단에 근거할 때 게재하기에는 부적합하게 평가될 수 있다. 형사처벌이나 반체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출판물에 대해 연방센터가 적극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을 짓기 어렵다. 왜냐하면 연방센터의 서면이 그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그리고 소제기인의 글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잔여분 파기에 대한 공지나 비방에 대한 사과문 어디에서도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다.

3. 대상이 되는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원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다르게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사안에서 주장된 배제청구권은 명백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가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데, 구체적 청구권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그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4. 소제기인이 그밖에 다른 기본권 특히 자신의 학문적 자유가 침해를 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 출처: 『AFP』 2010년 6월호 / P.560

■ 번역: 남기연(단국대 법학과 교수)

범인의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인터넷상 보도는 의도적 검색을 하는 이용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허용 된다

〈판결 요지〉

유죄판결을 받은 과거의 범죄사건 보도에서 범인이 특정된다면 이는 당연히 범인의 인격보호와 사생활 존중을 해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상 보도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와 달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즉 의도적 검색을 하는 이용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보도행위가 허용 된다.

판례번호 : 연방대법원 2011. 2. 1.자 판결,
VI ZR 345/09
(항소법원:OLG Hamburg)

관련조문 : 독일연방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민법 제823조 제1항 본문, 제1004조 제1항 2문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범인이 특정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형제와 함께 1993년 당시 유명 배우인 Walter Sedlmayr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원고는 2004년까지 수차례 확정판결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위한 소송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언론의 비난을 상대로 맞서왔다. 원고는 2008년 1월 보호관찰을 위해 구금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www.ksta.de)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08년 7월까지 대중적 판단을 묻고자 'Sedlmayr-살인: 법원이 재심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 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 사이트에 관련 당사자의 성명 등이 언급된 다음과 같은 내용 기사를 게재했다.

“L과 그 이복형제인 W는 1993년 5월 Sedlmayr 살해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었다. 영화배우 Walter Sedlmayr가 살해된 후 15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증거에 대한 흔적을 없애버렸다. 'Süddeutsche 일간신문'에 따르면 Augsburg 지방법원 형사부는 조만간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자 W와 L에 대한 소송이 다시 제기 될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L은 2004년 7월 3번째로 재심의 소송을 청구하였다. 그 사이에 W 역시 재심을 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기사는 본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자신의 성명이 언급된 범행을 보도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였고 원심에서 승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판단이유

I.

항소법원은 원고에게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그리고 민법 제823조 제1항 및 제100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를 특정하여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피고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008년 1월, 피고가 해당 보도를 퍼트릴 때 원고는 연방헌법재판소의 1973년 6월 5일자 판결(BVerfGE 35 S. 202 ff. = AfP 1973 S.423)에 근거를 두고 형사구금에서 벗어나있는 상태

였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기사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보도되지 않는데서 발생하는 원고의 이익이 해당 기사를 보도하고자 하는 피고의 이익보다 더 강조되며, 이 경우 해당 보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제약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언론사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범인의 성명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사안에서처럼 인터넷상의 보도가 지속적으로 게시되어있는 경우 과거의 보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상황만으로는 기존의 판단을 바꿀만한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당사자의 동일성을 알리는데 있어서 그것이 새로운 소식이든 과거의 소식이든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논란이 되는 보도가 키워드 또는 범인성명의 검색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건보도들은 신문, 라디오 또는 TV를 통해 보도되는 기사보다 그 확산정도가 아직은 덜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 역시 법익침해와 관련하여 가해자로 보았다. 가해자로서의 성격이 인터넷 보도라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접속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보도란에 게재된 보도 역시 다른 사건보도와 마찬가지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보도가 실린 게재란은 인터넷 접속통제의 적정성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미 문제의 내용에 대한 최초 공개가 위법했는지 또는 보도의 확산이 원천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II.

이러한 고려가 상고심에서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고에게는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그

리고 민법 제823조 제1항, 제1004조 제1항 2문에 의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는 부작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의 제기는 허용된다. 소 제기 이유를 보면, 피고가 인터넷상에 원고의 성명을 언급하며 Sedlmayr의 살인사건과 관련된 과거 보도를 실는 행위에 대하여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소제기가 모든 장래 보도행위에 대한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 청구에 대한 심사에서 고려된 소제기의 이유에서 알 수 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오로지 자신을 특정하는 과거보도에 대해서만 소제기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은 원고의 소제기를 받아들였고 원고 역시 이러한 점을 상고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제기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 항소법원은 인터넷상 기사에 원고의 성명을 공개해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게끔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보았다. 범죄자의 성명을 언급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범죄인의 반사회적 행위를 공공연하게 알리는 동시에 보도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범죄인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범죄인의 인격보호와 사생활 존중을 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신문이나 라디오 또는 TV에서의 통상적 보도처럼 적극적인 정보제공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본 사안처럼 인터넷상에 범죄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항소법원은 기본법 제5조 제1항과 유럽인권협약(EMRK) 제8조 제1항,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원고의 인격권보호 및 사생활 존중에 관한 권리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근거한 표현 및

보도의 자유에 대한 이익형량을 토대로 부작위청구권에 대해 판단하였다. 기본권으로서 인격권의 성격상 그 효력범위가 절대적으로 고정될 수는 없고 대립하는 기본법상의 보호법익과의 형량을 통해 정해져야만 하며, 그러한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해당 기본권과 유럽인권협약상의 보호법익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당사자가 갖는 보호법익이 보호해야 할 타인의 이익보다 중대할 때만 위법하게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은 인터넷상의 위법한 방법으로 게재를 해 원고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항소법원은 분쟁사안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익형량에 있어 피고에 의해 주장된 공공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중을 경미하게 두었다.

가.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위해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실제의 사실관계주장들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허위의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다. 진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 인격적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당연하다. 특히 보도행위가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고, 당사자에게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가 시사적으로 관심을 끌어서 이를 보도하는 것이 미디어의 임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범질서에 대한 위반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희생에 대한 공감, 그와 같은 범죄행위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이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공이 알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이 강조되면 될수록, 익숙한 범죄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두드러져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놓고 볼 때, 그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을 넘어 범죄와 그 진행과정, 범죄인 그리고 그 동기 및 형사처벌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필연적으로 범죄자의 인격권침해로 연결되는 사건에 대해 갖는 일반인의 알권리에 대한 이익형량에서 범죄에 대한 실시간 보도를 위해 일반적으로 알권리가 우선시 인정된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한 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의해 야기된 대중의 알권리를 만족시키는 데 따른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범죄행위 당시와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범죄인이 역시 자신의 과오가 다시 이슈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데서 얻어지는 이익 역시 점점 의미를 갖게 된다. 인격권은 범죄인의 신상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사적 영역에 대해 시간적 제한 없이 보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대비책뿐만 아니라 대중의 비난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는 법적 제재가 따라야 하며 대중에게 충분히 정보제공이 되어야 하는 경우, 범죄인의 인격권에 대한 반복적 침해가 재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중요한 비밀사실에 대한 원치 않는 보도에 완전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인격권이 범죄인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가 더 이상 공표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범죄인이 처벌 받았다 해도 범죄인에게 무제한적인 청구권을 취득하게끔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는 인격권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보도에 의해 침해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격권의 침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보도정도뿐만 아니라 표현의 방법과 종류가 중요하다. 따라서 TV보도는 기사보도보다 당사자의 사적영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한 침해를 야기한다.

나. 이러한 기본원칙에 의거하면, 본 사안에 있어 인격보호와 사생활 존중에 있어 원고가 갖는 이익은 피고가 주장하는 일반인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비해 뒤로 물러서게 된다. 물론 원고의 위법행위를 재차 이슈화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서 갖는 원고의 이익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법행위에 따른 범죄행위와 재판결과와는 오랜 과거사에 속한다; 2008년 1월 원고는 형사구금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반면 본 사안이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보도행위가 치명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재사회화를 위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당 보도가 원고를 '영원한 비탄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대중의 시각에서 원고를 범죄인으로 낙인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보도는 유명 영화배우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을 기초로 한 언급을 내포하고 있다. 기사는 해당 사건에 있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과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눈앞에 임박하였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있었다. 원고의 신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유명세, 범죄행위가 일반인에게 불러일으키는 대중적 관심의 정도, 2004년 당시 유죄선고를 받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재판결과를 취소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최초 공개시점에는 명백히 허용되었다.

해당 보도의 유형과 방법에 있어서 그 확산효과는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미디어의 확산정도 역시 크지는 않았다. 기존의 연방헌재판소 Lebach 판결(BVerfGE 35 S. 202 = AfP 1973 S. 423)에서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감정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범죄행위의 기억을 내용으로 하는 TV다큐멘터리였다. 이와 반대로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보도의 내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도적 검색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해당 보도는 오로지 소극적인 표현공간으로 구성된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며, 이러한 사이트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만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당 보도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눈에 띄는 면에 게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해당 보도는 지방법원의 판단에서도 증명하듯이 피고의 인터넷홈페이지 중 과거 기사를 올리는 페이지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사용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명시적으로 과거의 사건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해당 보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최근의 보도인 것 같이 보이는 문맥도 삽입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피고에게는 과거 시사적인 사건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대중이 알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상응해 미디어에게 주어질 임무는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관심 있는 이용자를 위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대한 공개 역시 할 수 있다. 미디어에게 조사 및 탐색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든지 과거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의 삭제를 허용하는 경우, 결국은 역사를 삭제하게 되고 범죄인은 완벽한 면책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점은 특히 본 사안의 대상이 된 범죄사건과 같이 대중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나아가 원고가 요구하는 금지는 자유로운 정보제공과 의견교환과정에서 연결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실행함에 있어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용자가 과거의 보도기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면, 피고는 표현의 자유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법상의 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최초 공개시점에서는 과거사건을 다루는 사이트에서 허용된 바 있는 과거의 기사화하는 것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거나 기초가 된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바로 허

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자신의 모든 기사거리를 항상 재차 그 적법성의 통제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는다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부당한 방법으로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인력,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측면에서 볼 때, 피고에게는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기사를 완전히 도의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4. 상고이유에 반하는 법적 판단이 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에 의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 규정의 인적·물적 적용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인터넷 상에 원고의 이름이 언급된 보도에 있어 연방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 1문에서 의미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해당하는지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도의 게시행위는 당사자의 동의나 연방정보보호법 제4조의 명시적인 법률 위임에 의존하지 않고 이른바 독일방송 국가계약(Staatsvertrag fuer Rundfunk und Telemedien, RStV) 제57조 제1항 1문에 의미하는 소위 미디어특권에 의해 허용여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 RStV 제67조 제1항 1문에 의하면, 언론기관이 텔레미디어의 제공자로서 오로지 언론 편집이나 집필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편집, 사용하는 경우 BDSG 제5조에 의해 정보비밀의 침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BDSG 제9조에서 의미하는 불충분한 기술상 또는 조직상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BDSG 제5조·7조·9조 내지 제38a 조가 적용된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의 수집, 편집 그리고 이용은 오로지 본 법 또는 다른 법 규정에 의해 허가되거나 당사자가 이를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는 BDSG 제4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RStV 제57조 제1항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디어특권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에서 담고 있는 미디어자유영향으로 발생하였다. 개인정보의 수집, 편집 그리고 이

용 없이는 또한 각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언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언론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 유럽인권협약(EMRK) 제10조 제1항 2문, 유럽연합 기본헌장 제11조 제1항 1문에서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나. RStV 제57조 제1항 1문에서 의미하는 정보보호법상 특권의 전제조건을 충족한다. 피고는 텔레미디어의 제공자로서 원고의 이름이 포함된 보도를 오로지 언론편집상의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1) 그 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개를 하는데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언론의 편집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에서 의미하는 보도의 의도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 내지 방송의 기능상 연관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만이 미디어특권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법상의 특권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를 보도 목적으로 조사, 편집, 공개, 기록 그리고 비치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호된다. 언론과 방송의 자유에 의해 기본법상 보장되는 미디어특권은 특히 개인정보의 보도목적 이용을 기본법 제5조 제1항, EMRK 제10조 제1항 2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공개행위로 보아 보호하고 있다. 정보가 해당 언론사의 자체 보도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오로지 자기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성명이 포함된 기사를 오로지 관련 목적으로 위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게시하였고 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조력하도록 하는 자신의 기본법상 의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상에 해당 보도내용을 삽입하여 계속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출판과정의 한 부분으로 기본법 제5조 제1항, EMRK 제10조 제1항이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에 해당 보도를 게시한 시간이 흘러 제반 상황이 변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출처 : 『AfP』2011년 2월호 / P.158~162
- 번역 : 남기연(단국대 법학과 교수)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 사례 1]

공적인물의 국적(國籍)을 언급하는 것은 당사자를 차별하거나 독자에게 편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신청인: Stelios Haji-Ioannou

인용된 조항: 1조, 12조

언론사: Financial Times

결정내용

기각(신문사가 윤리강령 제1조에 따라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했고, 제12조에 의거한 불만은 이유 없다).

결정일

2011. 9. 23.

신청내용

신청인 스텔리오스 하지 이오아누(Stelios Haji-Ioannou)는 2011년 5월 11일자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그리스인 스텔리오스로 인해 이지젯(Easyjet) 항공사가 피해가 본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와 제12조(차별적 내용)를 위반했다며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에 불만을 제기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롬바드(Lombard) 칼럼을 통해

이지젯이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실패했다는 신청인의 발언에 대해 논평했다. 해당 칼럼은 “스텔리오스가 이지젯의 11년 동안 불합리한 배당금 지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바로 그가 2009년까지 이지젯의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에 이지젯이 배당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에 예정된 배당금 분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한 스텔리오스의 열망은 아마 그가 다른 사업에서 재산을 날려버린 것임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게재했다.

신청인은 해당 칼럼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그는 1995년 이지젯을 설립하여 대주주가 되었으나, 2009년이 아닌 2002년에 이지젯 회장에서 사임하면서 대부분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11년 동안 불합리한 배당금 지급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지젯은 2000년에 주식을 신규상장을 한 이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배당금을 내년에 ‘재개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를 그리스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영국인이었고, 현재 영국과 키프로스 이중 국적자인 하지만, 그리스 시민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윤리강령 12조에 의거, 해당 기사가 그의 민족적, 인종적인 부분에서 편견을 가지고 보도한 것이라 주장했다. 최근 그리스로 인해 유럽의 여러 국가가 연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게 되어 유럽인들이 그

리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그리스인’, ‘믿지못할 외국인’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키프로스인을 언급할 때 줄여서 그리스인이라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사 제목에서 ‘그리스인 스텔리오스’이라고 쓴 것은 의도적으로 편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신청인은 이지젯 이사회에 평균 연령보다 자신이 10년은 젊지만 기사에서 자신을 ‘나이 많은 관계자’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의 재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고 특히 이지젯의 재무구조를 논의하는 기사와 비교해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주장

파이낸셜 타임즈는 신청인이 이지젯 회장직을 그만둔 연도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사과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개정판에는 이를 정정해 보도했으며, 배당금 지급을 재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장을 보도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또한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고, 원 기사와 동일한 칼럼에 다음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공표했다.

『5월 11일, 나는 스텔리오스 하지 이오아누가 2009년까지 이지젯 회장으로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그는 2002년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또한 자신이 이지젯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부족했다는 그의 주장은 처음 게재한 칼럼에서 반영되어져야 했다. 엄격히 말하면 이지젯은 지금까지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배당금 지급이 재개된다고 했던 나의 칼럼은 부정확했다. 이를 사과한다.』

그러나, 신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신청인은 자신을 ‘그리스인’으로 언급한 것이 부정확하

다고 주장하나 신문사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인이 그리스에서 태어났고, 평소 그리스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 왔다. 실제로 스텔리오스 자선기금 홈페이지에는 신청인을 “그의 출생지인 그리스에서 기업가정신을 더욱 고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그리스 선박왕인 故 루카스 하지 이오아누(Loucas Haji-Ioannou)의 아들”이라고 게재되어 있다. 둘째, 해당 칼럼이 신청인을 차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절 부인했다. 신문사는 배당금 지급이 부족하다며 이지젯 이사회에 대해 비판을 한 신청인의 행동에 대해 칼럼을 통해 비평할 자격이 있다. 셋째, 기사에서 사용한 ‘나이 많은 관계자’ 등의 표현은 어떤 의미도 없이 단순한 문어체적인 비유일 뿐이고 편견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윤리강령 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넷째, ‘그리스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독자적 사용은 경멸적인 뉘앙스를 갖지 않으며 해당 칼럼에서는 ‘그리스인’이라는 단어에 다른 부정적이고 편견을 주는 형용사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을 ‘믿지못할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신청인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정이유

기사는 신청인이 이지젯 회장에서 사임한 연도에 대해 심각한 실수를 범했다. 원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2009년까지 이지젯 항공사의 회장으로서는 배당금 지급과 관련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독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윤리강령 1조의 위반이다. 따라서 신문사가 정정 및 사과보도를 게재하는 것은 필요하고, PCC의 견해로는 이미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리강령 1조에 의거해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 중 중요한 쟁점 하나가 남아 있다. 바로 신청인을 ‘그리스인’ 이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PCC는 이것이 윤리강령 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비록 신청인이 기술적으로는 영국 태생이며 영국과 키프로스 이중국적자라 하지만, 그는 그리스-키프로스의 많은 문화를 수용해 왔고 직원들에게 스스로 그리스-키프로스 사람이라고 말해왔다. 이처럼 그는 공식적으로 그의 출생지를 그리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상 누군가의 국적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PCC는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을 그리스인이라고 묘사한 것이 윤리강령 1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다.

한편, 윤리강령 제12조 1항은 ‘신문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지역, 성별, 성적 지향성, 육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편견 혹은 경멸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순수하게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한 배경에는 ‘그리스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신청인은 해당 칼럼에서 자신을 ‘그리스인’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신에게 불만과 편견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독자들은 그리스로 인한 현재의 유럽지역 금융위기로 인해 그리스에 대해 불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인을 그리스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에게도 불만과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신청인의 견해로는 이번 금융 위기를 글로벌한 관점으로 봐야 하나, 그리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독자들은 자신을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PCC는 신청인의 이러한 사정을 주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사가 윤리강령 12조를 위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먼저, 기사의 헤드라인은 명확하게 신청인의 배경

과 이지렛과의 분쟁에 기초한 은유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은유적인 구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PCC는 신청인에 대한 편견과 경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둘째, 기사에서는 그리스의 금융위기에 관한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신문에서는 충분히 이와 관련한 기사를 쓸 수 있다. 만약 어떤 경제 신문이 그리스 금융위기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관련 기사에 그리스 국적의 누군가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그리스인’이라는 말이 편견이 아니다.

셋째, 신청인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은 PCC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신청인의 주장은 그의 배경이 좋지 않은 의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PCC는 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신청인의 배경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독자들이 신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청인이 그리스에서 태어났다는 보도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그는 홈페이지에 자신을 그리스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PCC는 신청인과 같은 공적 인물의 국적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신청인을 설명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해당 칼럼을 작성한 기자가 자신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PCC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PCC는 해당기사가 윤리강령 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다.

[영국 사례 2]

어린이의 불행이나 슬픔과 관련한 보도에서 그의 사진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재되어서는 안된다.

신청인 : Sharon Clark

인용된 조항 : 6조

언론사 : Maidenhead Advertiser

결정내용

인용

결정일

2011. 11. 24.

신청내용

신청인 샤론 클락(Sharon Clark)은 메이든헤드 애드버타이저(Maidenhead Advertiser)가 2011년 7월 21일 보도한 ‘아빠가 딸을 구하려 노력하다 죽었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동의 없이 신청인의 딸의 사진을 게재했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윤리강령 6조(어린이 관련)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13살 된 딸을 구하기 위해 템즈강에 뛰어들었다 사망한 마이클 페인(Michael Payne)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기사에 아빠와 함께 촬영한 어린이(딸)의 사진을 게재했다. 마이클 페인의 부인이자 어린이의 어머니인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녀의 사진을 게재한 기사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의 주장

이에 대해 신문사는 해당 사진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통신사가 신청인의 동의를 구한 것으

로 알고 게재한 것이나, 신청인의 불만 제기 이후 확인해 보니 통신사가 페이스북(Facebook)에서 해당 사진을 찾아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문사는 윤리강령 6조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편지 형태로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미 사과했으나,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청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의사를 밝혔다.

결정이유

윤리강령 6조는 ‘16세 이하 어린이의 행복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나 그와 유사한 책임을 가진 성인의 동의 없이는 어린이의 사진을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기사는 아빠가 딸을 구하려 노력하던 중 사망한 것에 대해 보도한 것이므로 PCC는 해당 기사가 명확하게 신청인의 딸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해당 기사는 신청인의 딸이 아빠와 목욕하려는 차림으로 꺼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는 명확하게 신청인측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신청인의 딸이 어린이임을 감안할 때, 신문사가 어린 소녀의 나이와 그녀가 겪은 비극에 대해 보도하고 사진을 공표함에 있어서 적절한 동의를 구했는가 확인하는 것은 신문사의 책무이다. 그러나 신문사는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윤리강령 6조의 위반은 명확하다.

PCC는 신문사가 신청인의 문제 제기 이후,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낸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보지만 윤리강령 6조 본연의 목적에서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신청인의 불만을 인용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의 2011

년 7월 16일자 사진(메이든헤드 애드버타이저 사진과 동일)에 대해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신청인에게 사과와 함께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고, 당사자 간 사적으로 화해했다.

[뉴질랜드사례]

유명인에 관한 가십성 기사는 일반 뉴스와 달리 윤리강령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 2190

신청인 : 사이언톨로지 교회

언론사 : New Idea

결정내용

기각

개요

신청인은 영화배우 케이티 홈즈(Katie Holmes)와 탐 크루즈(Tom Cruise) 부부에 대한 뉴 아이디어(New Idea)의 2개 기사에 대해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2011년 1월 31일 뉴 아이디어는 ‘케이티 홈즈, 사이언톨로지에 집착’이라는 제목으로 홈즈의 건강과 정신상태, 외모 등에 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보도는 홈즈가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e-meters’라는 장치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이전 사이언톨로지 신자들의 주장을 게재하면서, 스타 매거진(Star Magazine)의 기사와 ‘e-meters’가 신자들의 감사나 상담에 정기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2명의 이전 사이언톨로지 신자의 주장을 인용했는데, 사이언톨로지 신자 중 한명은 자신이

‘e-meters’를 경험했을 때 마약을 하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톰 크루즈가 그의 아내인 홈즈에게 힘든 시기가 있을 때 사이언톨로지에 더욱 심취할 것을 권유했다는 한 내부 고발자의 주장을 게재했다.

두 번째 기사는 2011년 2월 21일자 뉴 아이디어에 게재된 ‘톰 크루즈가 FBI의 조사에 충격을 받았다. 위기에 처한 사이언톨로지’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 기사는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 교회가 인신매매와 폭력적인 처벌, 강제 노동에 관여되어 있다는 FBI 보고서를 본 후 동요하고 있다는 뉴욕커 매거진(New Yorker Magazine) 기사를 인용했다. 또한 사이언톨로지 교회의 다양한 부정적인 활동들에 대한 과거 사이언톨로지 신자들의 증언을 게재하면서 취재기자의 설명을 덧붙였다.

신청내용

뉴질랜드 사이언톨로지 교회의 사무총장인 마이크 페리스(Mike Ferriss)는 2월 4일에 편지로 뉴 아이디어의 편집장에게 1월 31일자 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기사가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잘못된 내용과 오해를 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독자들에게 편견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내용이므로 부정확하고 균형을 잃은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뉴 아이디어가 해당 기사를 작성하면서 교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전의 신자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 21일자 기사에 대해서도 편집장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해당 기사의 많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특히 거짓이고 부정확하고, 추측과 오해를 줄 만한 헤드라인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사이언톨로지에 관한 많은 부정적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뉴 아이디어의 직원이 뉴질랜드나 전세계의 사이언톨로지 교회에 한 번도 나타난 적도 없었다고 주장

했다.

언론사의 주장

4월 13일 뉴 아이디어 편집장 헤일리 맥라린(Hayley McLarin)은 신청인에게 답장을 하면서, 첫 번째 기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전세계 정보원으로부터 확인해 보도한 것이며,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뉴질랜드에 소재한 신청인의 교회로부터 의견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녀는 두 번째 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사이언톨로지 신자들의 주장을 게재한 것이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진실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비록 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독자들의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잡지가 심각한 뉴스 저널이 아니라 유명인사들에 대한 가십과 연예를 중심으로 다루는 여성잡지라는 사실로 볼 때, 해당 기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독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 이유

두 번째 기사는 교회의 대표자와 톰 크루즈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용한 균형성을 가진 저널리즘적인 기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첫 번째 기사는 저명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주장을 게재하면서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고, ‘내부고발자’ 또는 ‘정보원’이라고 표시했을 뿐 명확히 취재원의 이름을 밝힌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두 개의 기사는 뉴 아이디어 편집국장이 말한 것처럼 심각한 저널리즘적인 기사가 아니므로 독자들이 그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해당 기사들은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의 발언을 인용하

면서, 이러한 발언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회 관계자들은 두 기사 모두 유명한 배우인 케이트 홈즈와 탐 크루즈에 대한 가십성 기사로, 해당 보도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기보다 이들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더 가깝다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가십이라는 장르는 그 특성상 유명인과 관련한 보도에서 일반 기사보다 제약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언론평의회는 기사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추측이나 고의성이 있다하더라도 윤리강령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한다. 또한 언론평의회는 이번 사건의 기사와 같이 뉴질랜드 외부의 유명인과 조직에 관한 기사나 해외의 저자에 의해 작성된 기사는 보도에 앞서 뉴질랜드에 소재한 관련 조직의 의견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

언론법제관련문헌

- 광수근 (2011. 11. 11). 올드미디어 신문의 뉴미디어 트위터 보도내용 분석 :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김경환 (2011. 12. 13). 소셜 미디어 등장과 지역방송 편성과 제작방향. 광주전남언론학회주최, '소셜 미디어 시대에 지역방송의 활로 모색' 세미나 발제문.
- 김동민 (2011. 11. 11). 포스트저널리즘시대 한국 언론의 철학적 성찰.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김민기 (2011. 11. 19). SNS의 사회적 현상에 담긴 철학적 함의. 한국방송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김충일 (2011. 11. 30).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언론중재위원회,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공동주최, '주요 언론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토론회 발제문.
- 류성진 (2011). 인터넷 뉴스 무료 이용과 종이신문 콘텐츠 (불)만족도가 종이신문 정기구독 이탈 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233~260.
- 류정호 · 이동훈 (2011). 소셜 미디어로서 마이크로 블로그 공론장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09~330.
- 박경신 (2011. 10. 13). 영화와 표현의 자유.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 법률연구소 주최, '2011 부산국제영화제 아카데미 - 영화와 인권' 발제문.
- 박동주 (2011. 11. 3). 한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조정.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주최, '제3회 국제 방송통신 분쟁조정 포럼 -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조정 사례 및 제도' 발제문.
- 박상호 (2011. 12. 2).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지상파방송의 광고제도 개선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지상파방송 제도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문.
- 박석철 (2011. 10. 13). 지역방송의 디지털전환 활성화 방안. 강원언론학회주최, '2011년 가을 정기 세미나 - 지역방송의 활로 개척과 미래' 발제문.
- 박종경 · 채영길 (2011. 10. 15). 한국과 미국의 대안 미디어 연구 경향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박주연 · 전범수 (2011. 11. 19). 소설 미디어를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뉴스정보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박진우 · 김위근 · 김성욱 (2011. 10. 15).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공익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연구.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박태순 (2011. 10. 7). 2007년 프랑스 대통령 후보 토론. 한국소통학회주최, '해외선거방송 토론 사례연구' 특별세미나 발제문.
- 박현경 (2011. 10. 13). 영화와 명예훼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 법률연구소 주최, '2011 부산 국제영화제 아카데미 - 영화와 인권' 발제문.
- 범기수 (2011. 10. 7). 영국 총선 TV토론 : 2010년 영국 총선 각당 대표 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주최, '해외선거방송 토론 사례연구' 특별세미나 발제문.
- 배기형 (2011. 11. 16). 다문화사회에서 이주 노동자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경제연구소 공동주최, '2011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 II - 아시아 상생을 위한 언론의 역할' 발제문.
- 백영민 (2011. 12. 19). 네트워크 관점으로 본 여론의 변동 : 공적 속의가 사회적 / 텍스트적 네트워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회주최, '언론과 사회분과 송년세미나 -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와 문화: 담론의 주체와 성격 변화' 발제문.
- 설원태 · 김성해 (2011. 12. 3). 글로벌 시대, 언론인 소통의 현황과 과제. 한국소통학회주최, '2011년 가을철 학술대회' 발제문.
- 송중현 (2011. 12. 6). 선거 여론 조사 언론 보도에 대한 점검과 성찰. 한국언론학회주최, '선거 여론조사와 뉴스보도 :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학술 세미나 발제문.
- 송현주 (2011. 11. 19). 언론의 파업보도의 공정성 : 한진중공업사태 보도 분석. 한국방송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심영섭 (2011. 11. 11). 미디어 활용 교육의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심재철 · 오미영 (2011. 1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론. 한국언론학회주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 및 방향성' 세미나 발제문.
- 안병하 (2011. 11. 25).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동향 - 카롤리네 (Caroline)와 말레네 (Marlene) -. 한독법률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2011 한독법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제문.
- 양문희 (2011. 12. 2).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지상파방송의 편성 및 심의제도 개선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지상파방송 제도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문.
- 양재규 (2011. 10). 법을 알고 기사쓰기 75 - '몰래 녹음' 이면 음성변조 후 보도해야 안전. 『신

문과 방송』, 통권 490호, 74~77.

- 양재규 (2011. 11). 법을 알고 기사쓰기 76 - 논쟁적 주제 다룰 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신문과 방송』, 통권 491호, 95~99.
- 양재규 (2011. 12). 법을 알고 기사쓰기 77 - '인격권에 관한 동의'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무효될 수도. 『신문과 방송』, 통권 492호, 74~77.
- 양홍석 (2011. 11. 11).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엄 열 (2011. 11. 24).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and harmful online content.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주최, '2011 국제컨퍼런스 -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방안 모색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and Harmful Online Content)' 발제문.
- 원용진 (2011. 11. 11). 미디어-문화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윤영철 (2011. 12. 12).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의 쟁점과 전망.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한국의 뉴스미디어 2011 -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저널리즘' 토론회 발제문.
- 윤주성 · 이오현 (2011). 지방정부의 지역언론 통제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58~381.
- 윤지희 · 이건호 (2011). 한국 5개 종합일간지 오보 정정의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27~53.
- 이광석 (2011. 11. 11). 현단계 SNS문화 정세 진단, 퇴행과 자유의 변주.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이상록 (2011). 『언론분쟁 뛰어넘기: 현직 기자가 말하는 언론분쟁 대응 노하우』, 1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상철 (2011. 10. 7). 2008년 미국 텔레비전 선거 방송 토론 분석. 한국소통학회주최, '해외선거방송 토론 사례연구' 특별세미나 발제문.
- 이상훈 (2011. 10. 7).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강화 방안: 프랑스 사르코지 개혁법을 중심으로. 호남언론학회주최, '2011 가을철 세미나 - 스마트 TV시대의 방송의 역할과 전망' 발제문.
- 이제영 (2011. 10. 13). 지역방송의 제작협찬 활성화 방안. 강원언론학회주최, '2011년 가을 정기 세미나 - 지역방송의 활로 개척과 미래' 발제문.
- 이준웅 (2011. 12. 6). 선거 여론 조사에 대한 점검과 성찰. 한국언론학회주최, '선거여론조사와 뉴스보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학술세미나 발제문.
- 이진로 (2011. 11. 11).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언론 구조.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임덕기 (2011. 11. 21). 인터넷 진흥법제 개선방안.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법학회, ICR 센터 공동주최, '스마트·컨버전스를 위한 인터넷 법제 세미나' 발제문.
- 임성호 (2011. 11. 19). 지역사회와 소셜미디어. 한국방송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장성준 (2011. 11. 19). 사회참여 장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가능성과 그 의미. 한국방송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장재운 (2011. 11. 30).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언론중재위원회,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공동주최, '주요 언론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토론회 발제문.
 - 정의철 (2011. 12. 3). 방송의 공익성과 규제의 의미. 한국소통학회주최, '2011년 가을철 학술대회' 발제문.
 - 조능희 (2011. 11. 19). <PD수첩>, 대법원 판결 그 후. 한국방송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조원철 (2011. 12. 7).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 언론중재위원회주최, '2011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 SNS와 인격권 침해' 발제문.
 - 진달용 (2011. 11. 19). 뉴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스트 재교육 방안 비교 연구: 전문대학원 커리큘럼 및 콘텐츠 제작 가능성에 관한 소고. 한국방송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최성은 (2011. 10. 7). 디지털 전환 이후 지역방송의 역할과 지역 수용자 지원 방안. 호남언론학회주최, '2011 가을철 세미나 - 스마트 TV 시대의 방송의 역할과 전망' 발제문.
 - 최영목 (2011. 11. 19). PD정신 혹은 PD저널리즘. 한국방송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최용익 (2011. 11. 11). PD저널리즘의 형성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광우병 관련 'PD수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최윤정·이중혁 (2011).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의 기사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54~75.
 - 현경보 (2011. 12. 6). 2012년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선거여론조사와 보도: 전망과 제언. 한국언론학회주최, '선거여론조사와 뉴스 보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학술세미나 발제문.
 - 황용석 (2011. 12. 7). SNS와 언론보도. 언론중재위원회주최, '2011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 SNS와 인격권 침해' 발제문.
 - 황유선 (2011. 10. 15).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격차.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 - 3114 언론분쟁상담 02) 397 - 3000, 3010, 3100, 3110 팩스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 - 7083~4 팩스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 763 - 0020~1 팩스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 676 - 0360~1 팩스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 525 - 0778~9 팩스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 211 - 9022, 9027 팩스 031) 211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 255 - 2878~9 팩스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산남동 657번지)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 286 - 8081, 8083 팩스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 288 - 0010, 0981 팩스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 263 - 1780, 1787 팩스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 5길 6(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 722 - 3328, 3352 팩스 064) 726 - 3201

